

宋春根 관련 재판자료

편집자주

본편은 양주 출신 독립운동가 송춘근(宋春根, 송봉해, 1887.12.18~1971.4.26)과 관련된 신문조서(訊問調書)이다. 송춘근은 1919년 3월 1일 탑동공원(현재 탑골공원)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국내에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1919년 2월 경, 세브란스의전(醫專) 3학년 재학 중 3·1운동 학생대표 연회전문학교생 김원벽(金元璧) · 보성전문학교생 강기덕(姜基德) 등의 연락을 받고 학생동원을 책임졌다. 그는 동료학생들에게 3월 1일 정오까지 태극기와 적색 리본을 가지고 탑동공원으로 집합하도록 하고 그날 거행된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하였다. 더불어 그는 세브란스의전 스코필드의 도움을 받아, 일제의 한국인 학살만행을 촬영한 사진을 미국선교회와 신문사에 보내기도 하였다.

같은 해 8월, 그는 남감리교 전도사인 김조길(金祚吉)로부터 상해에서 발행되는 『국민신문(國民新聞)』 · 『독립신문(獨立新聞)』 등을 춘천에 거주하는 기독교도와 유력자들에게 배포하여, 임시정부의 활동상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 27일 미국 남감리파의 전도특파원(傳道特派員)이 춘천에 오는 것을 기회로, 춘천교구에 속한 남감리파 교도가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을 단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선언서(宣言書)' 2개 · 축하가(祝賀歌) · 독립운동가(獨立運動歌) 등 인쇄물을 만들어 춘천지역에 비밀리에 배포하던 중 일경에 발각되었다. 그는 이 일로 피체되어, 1920년 10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처벌령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본편은 송춘근이 김조길 등과 같이 피체된 사건에 관한 신문조서로 구성하였다. 송춘근은 물론 같이 기소된 김조길 · 이동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조사받은 여러 사람들의 신문조서도 더불어 게재하였다. 자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을 참조하였다.

서지명: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2~42

宋春根 관련 재판자료

수사복명서(二)

春川郡春川面佳淵里九六번지

金祚吉

당 三九세

위 사람 대정 八년 四월 一五일에 제령 제七호 위반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라는 명을 받고 다음과 같이 수사하다.

다음

一, 금일 오후 二시에 金祚吉의 자전거 수리판매의 점포 한구석의 방을 그의 아내 金活蘭의 승낙을 받고, 그녀의 입회하에 조사한 바,

京城府櫻井町二丁目一五五번지, 八월 一六일 宋春根 발신, 金祚吉 앞으로 온 서신 一통을 발견했음.

그것을 지난 一일에 金祚吉의 집 서랍 속에서 발견한 「등기 반포의 주의 건」 및 불온문서를 넣어 소포로 우송해 왔다는 굴상자 속의 신문지쪽과 함께 섞여 있는 불온문서를 포장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종이쪽에 「江原道分宣五〇〇, 京城 三角町 六四번지 石明根」이라고 잉크의 펜을 쓴 필적과, 오늘 발견한 宋春根이라고 기명된 서신과를 대조해 보니 그 필적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었음.

一, 이로 미루어 살펴보니 金祚吉은 지난달 二九일에 宋東秀라는 사람에게서 우송되었다는 굴상자에 든 불온문서의 발송인은 오늘 발견한 京城府櫻井町二丁目一五五번지에 사는 宋春根이라는 사람의 행위라고 사료됨.

위 복명함.

그리고 오늘 발견한 宋春根 이름의 서류는 金活蘭의 승낙을 받고, 맡아왔으므로 첨부하고, 본건은 宋春根과 金祚吉과의 사이에 매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이 불온문서 거래를 한 것으로 사료되어 첨언함.

대정 八년 —二월 一일

春川경찰서 근무

순사 伊藤龜藏

春川경찰서

경부 鈴木貢 귀하

金祚吉 신문조서(제2회)

문 : 그대는 金祚吉이 틀림없는가.

답 : 그렇다.

문 : ——월 二九일 오후 二시경에 선언서가 든 우편물을 열었을 때 어떤 감상이었는가.

답 : 마음이 흥분되었다.

문 : 열기 전에는 어떤 감상이었는가.

답 : 철물상에서 보내온 것이므로 영업상의 물건으로 상상했었다.

문 : 종래의 宋東秀가 물품을 보내준 일이 있는가.

답 : 없었다.

문 : 그대는 상자를 열고나서 선언서를 읽었는가.

답 : 일단 읽었다.

문 : 그대의 아내는 어떻게 했는가.

답 : 아내와 함께 열었다. 내가 읽을 때 옆방에 들어가서 읽었으므로 아내는 모른다.

문 : 읽은 뒤에 어떻게 했는가.

답 : —조 四장씩 二〇조를 만들었다.

문 : 어떤 목적으로 二〇조를 만들었는가.

답 : 보려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문 : 그 때 줄 사람은 누구누구로 예정했는가.

답 : 따로 누구누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줄 생각이었다.

문 : 그 二〇조는 어떻게 했는가.

답 : 우선 벽장 위에 숨겨 두었었다.

문 : 상자에 넣은 쪽은 어떻게 했는가.

답 : 다시 뜻을 쳐서 혀간에 두고, 위에 고리짝 같은 것으로 덮어 두었다.

문 : 최초로 준 것은 누구인가.

답 : 金敏秀에게 주었다.

문 : 언제, 어디에서 주었는가.

답 : 二九일 오후 四시경 「조끼」 속에 넣고, 金의 집으로 가서 온돌방에서 金을 만나서 주었다.

문 : 어떤 말을 했는가.

답 : 이것은 선언서라고 하면서 주고는, 본 뒤에는 불태우라고 했다.

문 : 金敏秀는 승낙했는가.

답 : 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받았으므로 그대로 돌아왔다.

문 : 그 때 一조만 휴대했는가.

답 : 一○조쯤 휴대했다.

문 : 다음엔 어디로 갔는가.

답 : 嚴中煥에게 갔다.

문 : 一조를 주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다음은 어디로 갔는가.

답 : 李東華의 집으로 갔다.

문 : 어디에서 만났는가.

답 : 사랑방에서 만났다.

문 : 李東華 외에 누가 없었는가.

답 : 아무도 없었다.

문 : 어떻게 주었는가.

답 : 선언서가 京城에서 왔다는 것을 말하고, 一조를 주었더니 李東華는 그것을 읽었다.

문 : 그리고 六조를 준 것이 아닌가.

답 : 주었다.

문 : 李東華가 다시 딴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주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李東華는 승낙했는가.

답 : 승낙했다.

문 : 이전에 약속했던 것이 아닌가.

답 : 약속은 없었다.

문 : 몇시간 회담했는가.

답 : 약 一〇분간쯤이었다.

문 :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답 : 집으로 돌아왔다.

문 : 그 때 몇조나 남았는가.

답 : 二조쯤 있었다.

문 : 그날 밤에 그 외에 주었는가.

답 : 그 밖에 주지 않았다.

문 : 교회당으로 갔는가.

답 : 갔지만 선언서는 휴대하지 않았다.

문 : 교회에서 선언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가.

답 :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문 : 다음날은 어떻게 했는가.

답 : 오전 중에는 일요일이므로 교회에 갔으나 휴대하지 않았다. 저녁 때 四조를 휴 대하고 교회에 갔다.

문 : 누구에게 줄 생각이었는가.

답 : 아는 사람에게 줄 생각이었다.

문 : 누구에게 주었는가.

답 : 오후 八시경에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교회 문 밖에서 一조를 池達源에게 주었다.

문 : 어떤 말을 했는가.

답 :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언서라고 하면서 주었다. 어떤 친숙한 사람에게도 보이지 말고, 그대가 보거든 태워버리라고 했다.

문 : 池達源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답 : 알았다고 하면서 받았었다.

문 : 다른 문서는 어떻게 했는가.

답 : 원래 분대 앞 공동변소에 二조를 놓아두었다.

문 : 어떤 목적이었는가.

답 : 타인이 보고 가져가라고 놓아두었었다.

문 : 그날은 그 외에 준 사람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一二월 一일은 어떻게 했는가.

답 : 二조를 포켓에 넣고, 一조를 加平으로 보내고, 一조는 경찰서로 동행될 때에 사진관 앞에서 버렸다.

문 : 加平교회의 李起永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답 : 그에게 알릴 생각으로 보냈다.

문 :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특사를 시켜서 보낸 것은 어째서인가.

답 : 타인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 : 서면에는 어떤 것을 썼는가.

답 : 金在榮에게 보이고 태우라고 써 두었다.

문 : 洪川쪽에는 보내지 않았는가.

답 : 안보냈다.

문 : 麟蹄, 楊口, 華川, 襄陽에는 보내지 않았는가.

답 : 一조도 보내지 않았다.

문 : 선언서에 대하여 외국인에게는 말하지 않았는가.

답 : 전혀 말하지 않았다.

문 : 劉漢翼에게는 말하지 않았는가.

답 : 말하지 않았다.

문 : 목사 洪鍾肅에게는 주지 않았는가.

답 : 一조를 주었다.

문 : 언제, 어디서 주었는가.

답 : 一一월 三〇일 밤에 京南자동차부 앞에서 주었다.

문 : 金光鎬에게는 언제 주었는가.

답 : 一一월 二九일 오후 四시 三〇분경에 내 영업소로 왔을 때에 선언서가 온 것을

말하고 주었다.

문 : 金光鎬에게도 본 뒤에 태우라고 하면서 주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그대는 京城에서 선언서를 발송한 사람을 비밀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문 : 그대는 그 발송인으로 기명되어 있는 金東秀가 보낸 것으로 믿고 있는가.

답 : 金東秀의 이름을 빌려서 딴 사람이 보냈다고 생각한다.

문 : 발송인으로 그대가 상상하는 사람은 없는가.

답 : 누구인지는 모르나, 필적으로 판단하기로는 宋春根으로 생각한다.

문 : 宋春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답 : 宋이 五·六年 전에 春川에 있을 때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도 예수교 신자이다.

문 : 금전 대차관계는 없는가.

답 : 없다.

문 : 그대는 이 서면을 아는가.

여기에서 피고인 주택에서 나온 서면을 보이다.

답 : 그것은 宋春根이 보낸 것이다.

문 : 그 서면에 의하면 그대는 금년 八월 一六일 大同신보를 수령한 것이 아닌가.

답 : —장 받았다.

문 : 어떻게 했는가.

답 : 崔兌崑에게 주었다.

문 : 또 자전거를 보냈는가.

답 : 자전거는 안보냈다.

문 : 또 등사판을 보냈는가.

답 : 안보냈다.

문 : 그대는 등사판을 어떻게 했는가.

답 : 宋春根이 春川에 왔을 때 고물상 安東植의 집에 있던 것을 보고, 보내 달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내라는 의미였다.

문 : 宋春根은 六월 二五·六일경에 春川에 온 일이 있는데, 그 용건은 무엇이었는가.

답 : 세브란스병원 의학교가 휴강 중이었으므로 왔었다.

문 : 독립운동의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닌가. 어떤가.

답 : 그런 것은 모른다.

문 : 독립운동에 관하여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답 : 자기는 신보를 발행하는데, 돈 또는 자전거를 달라고 했다.

문 : 宋春根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답 : 세브란스병원 의학전문학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문 : 그대는 지난번 京城 방면으로 여행한 것이 아닌가.

답 : 그렇다. 京城으로 「모오타」를 사려 갔었다.

문 : 그 때 京城에서 宋春根은 만나지 않았는가.

답 : 만나지 않았다.

문 : 서양인 또는 예수교도와 만나지 않았는가.

답 : 培材학당의 교사 洪秉璇과 만났었다.

문 : 어떤 용건이었는가.

답 : 주일학교 공과의 잡지를 발간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책을 사려는 생각으로 갔었다.

문 : 그대는 京城에서 비밀로 누구를 밀회하고, 선언서 배포의 약속을 했던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그대는 선언서에 기재된 기사를 사실로 믿었는가.

답 : 임시정부가 있는 것은 믿었지만, 독립이 될지 아닌지는 의문이었다. 또 배포하기 위하여 보내온 것이었으므로 조금씩 배포했었다.

문 : 그대는 春川에서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가.

답 : 주로 예수교도인데, 李東華, 尹錫圭, 洪鍾肅, 池達源, 金光鎬 등은 친구들이다.

문 : 그대가 선언서를 배포하는 것을 아내도 알고 있는가.

답 : 전혀 모른다.

문 : 그대는 대담하게도 선언서를 배포한데 대하여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가.

답 :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京城에서 보내온 것이었으므로 그것을 배포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배포했었다.

문 : 그밖에 할말은 없는가.

답 : 없다.

위를 통역에게 읽어 주고, 또 통역으로 하여금 조서의 취지를 본인에게 알려 주게
하였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므로 서명 날인하게 하다.

대정 八년 一二월 二일

春川경찰서에서

피고인 金祚吉

도경부 鈴木貢

통역 도경부 徐相瑛

金祚吉 신문조서(제三회)

문 : 그대는 金祚吉인가.

답 : 그렇다.

문 : 그대는 京城 세브란스병원의 宋春根에게서 大同신보 一장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는데 거짓일 것이다. 더많이 받았을 것이다. 어떤가.

답 : 一장 뿐이다.

문 : 목사 崔兌崑을 조사했더니 공장에서 국민신보 一장, 예수교병원에서 대동신보
一장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가.

답 : 공장에서 준 일은 없다.

문 : 一一월 三〇일 교회당에서 尹錫圭에게 京城의 철물점에서 소포가 왔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닌가. 상세하게 진술하라.

답 : 그날 오후 七시경에 교회당 문 밖으로 나가서 尹錫圭를 불러내어 京城에서 소
포로 선언서가 많이 왔다는 것을 말했더니, 尹은 나에게 주의하라고 대답했었다.

문 : 그대는 尹錫圭에게 줄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답 : 몇장을 그에게 줄 생각으로 말하였으나, 달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주지 않았다.

문 : 그대는 尹錫圭 외에 상의한 사람이 없는가.

답 : 없다.

문 : 李東華의 집에서 尹錫圭, 崔養浩 등이 모여서 합자회사 설립에 대하여 상의하지 않았는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그대는 근자에 친구들에게 돈을 보낸 일이 없는가.

답 : 없다.

문 : 그대는 宋春根에게서 一회, 대동신보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는데, 宋 이외의 사람에게서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그대의 집에 伊藤공작이 하얼빈에서 살해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유는 어떤가.

답 : 伊藤공작은 훌륭한 인물이었으므로 사 두었었다.

문 : 그런 의미라면 다른 초상을 샀을 것이 아닌가.

답 : 그 외에 없었으므로 그것을 샀었다.

문 : 그대의 집에서 이 창가가 발견되었는데 그 사유는 어떤가.

여기에서 주택에서 발견된 창ガ를 보였다.

답 : 다만 볼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 따로 나쁜 생각은 없었다.

문 : 그 밖에 베껴서 주지 않았는가.

답 : 그 밖의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다.

문 : 그대는 黃海道 사람에게 영업소 및 주택을 팔려고 한 것은 어떤가.

답 : 平壤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 : 그대는 尹錫圭, 李東華, 金泳模 등과 중국요리점에서 많이 만났었는데, 무슨 까닭인가.

답 : 단순히 회식했을 뿐이다.

문 : 그대의 일기 중에 李完用, 尹德榮 외 五명의 성명을 열거한 것은 어떤가.

답 : 유명했기 때문에 열거해 두었다.

위를 통역에게 읽어 주고, 또 통역으로 하여금 조서의 취지를 본인에게 알려 주게 하였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므로 서명 날인하게 하다.

대정 八년 一二월 三일

春川경찰서에서

피고인 金祚吉

도경부 鈴木貢

통역 도경부 徐相瑛

金祚吉 신문조서(제四회)

문 : 그대는 金祚吉인가.

답 : 그렇다.

문 : 이 편지는 그대가 발송한 것인가.

여기에서 李象儀 앞으로 보낸 편지를 보이다.

답 : 그렇다.

문 : 이 서면 중에 지난번 京城으로 갔다가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돌아올 수가 없었
다고 했는데 어떤가.

답 : 별다른 용무는 아니었다. 내가 타고간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수선하기 위해
서였다.

문 : 또 서면 중에 형님이 지시한 것 같이 金振榮을 보냈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답 : 金振榮이 아무 말도 없이 春川에 왔으므로 金振榮의 부모가 李象儀의 집으로
가서 돌아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李象儀가 나에게 편지로 알려온 일이다.

문 : 그대는 京城에서 宋春根을 만나지 않았는가.

답 : 만나지 않았다.

문 :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선언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만약 宋春根을 체포하여 말한 것이 판명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답 : 그렇다면 알아도 좋다.

문 : 그대는 그 밖에 할말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그대는 선언서 등을 배포하는 것을 마음 속으로 좋은 일로 생각하는가.

답 : 부득이 배포했다.

위를 통역에게 읽어 주고, 또 통역으로 하여금 조서의 취지를 본인에게 알려 주게
하였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므로 서명 날인하게 하다.

대정 八년 一二월 五일

春川경찰서에서

피고인 金祚吉

도경부 鈴木貢

통역 도경부 徐相瑛

보고서

본적 京畿道楊州郡廣積面佳納里一五六번지

주소 京城府櫻井町二丁目一五五번지 李貞根 방동거

京城 사립 세브란스 京鄉의학전문학교 생도

예수교 신자 宋春根

당 二七세

위 사람 대정 八년 제령 제七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에 관한 건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金祚吉과 공범관계자로서 소재를 수사하여 동인을 인치하라는 명을 받고, 본
직 등이 京城으로 출장하여 수사하고, 宋春根을 체포 인치한 전말은 다음과 같음.

一, 체포한 일시 및 장소

대정 八년一二월 五일 오후 四시 一〇분 京城 남대문 안, 남대문에서 북쪽으로 약
四〇칸쯤 떨어진 지점, 전차 통로상에서 宋이 학교에서 주소지를 향하여 돌아오는 도
중에 그를 체포했음.

一, 관계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다.

(가) 京城蓬萊町一丁目二번지 철물상 宋東秀는 京城시내 구역 개정 도로공사 때문에 가택의 이전의 명령을 받고, 一一월 상순에 京城南大門通四丁目五五번지로 이전하여 현재 철물상을 경영하고 있는데, 春川읍내 大板里 金祚吉이라는 사람에게 상품을 매도한 일 및 金에게 소포우편물을 발송한 일의 유무에 대하여一二월 五일 宋東秀에 대하여 조사했으나 그런 사실은 없고, 金祚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면식이 없기 때문에 하등 마음에 가는 데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京城의 本町경찰서에 宋東秀라는 사람의 성행을 물었더니 그는 별로 불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宋東秀에 대하여 세브란스의학교 생도로 宋長根이라는 사람과 아는 사이인지, 기타 교제관계의 유무도 조사했으나 없다고 한다.

(나) 京城府三角町六四번지에 石明根이라는 사람의 유무를 조사했더니 그 번지에는 李寅泳 외三인이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물으니 石明根이란 사람이 거주한 일은 없다고 했음.

一, 宋春根을 체포하여 京城의 本町경찰서에 유치할 것을 부탁한 뒤에 宋春根의 주소라고 진술한 京城府櫻井町二丁目一五三번지에 대하여 그와 동거하는 李貞根(二八세)의 승낙을 얻고, 宋春根의 거실, 소유물 및 동거하는 李貞植의 소지품 및 주거 일반에 걸쳐 구석까지 조사했더니, 宋의 수발신 편지 중에서 宋春根 앞으로 上海 프랑스조계 里馬路의 天主堂의 李라고 쓴 엽서형 봉서(속에는 아무 것도 없었음)一장 및 池達源이 보낸 宋春根 앞 엽서一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증거품으로 그것을 李貞植의 승낙을 얻어서 가영치하여 가지고 왔음.

그리고 전기 李貞植은 표면상 집주인으로, 宋은 그의 집에 하숙해 있는 것처럼 가장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작년부터 정교가 있었고, 宋의 아내로 현재 楊州 본적지에 있는 사람과 이혼한 뒤에 정식 결혼하여 부부가 될 약속이 되어 있다. 사실은 宋과 李 사이는 부부와 마찬가지로 의식주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임.

一, 宋春根을 체포하기까지의 수사상 취한 수단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一) 一二월 三일 오후 二시 本町경찰서에 가서 출장의 뜻을 말하고 원조를 구했다. 일본인 一명, 조선인 一명의 형사 순사를 빌려서 세브란스 의학교 문앞에 가서 생도가 퇴교할 때에 宋을 잡으려고 수배했다.

한편 조선인 순사로 하여금 그 학교의 생도감독에게 宋의 유무를 물으니 宋은 三·四일 전에 楊州의 부친 병환으로 휴가를 얻어서 그날 귀향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오후 五시 三〇분이 되어 다른 생도는 퇴교가 끝났는데, 宋이 퇴교하지 않았으므로 과연 宋은 본가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믿었음.

(二) 一二월 四일 아침에 京城을 출발하여 楊州郡廣積面佳納里의 宋의 본가에 가서 春根의 부친 命善 및 모친 金씨에게 물으니, 부친 命善의 병환으로 지난달 말에 春根의 아내 吉씨를 시켜서 약을 가지고 간호하려 오라고 알리게 했는데, 春根은 一一월 三〇일 귀가했다가 다음 一일 아침에 京城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판명되었음.

또 一二월 一일 저녁 때 귀경 후 京城鍾路 信行여관에서 宋春根이 부친 앞으로의 서면을 一二월 四일에 받은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그것을 보니, 한번 본가에 와서 一

박하고 京城으로 돌아온 것이 판명되었음.

그날 밤에 京城으로 돌아와서 鐘路 신행여관에 가서 宋이 왔느냐고 물으니, 그는 그 집에 오지 않았고, 또 宋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성명마저 들은 일이 없다고 해서, 이것 또한 요령을 얻지 못했음.

(三) 楊州의 본가 사람의 말 및 本町경찰서 형사 순사의 말에 宋春根의 숙소는 京城의 授恩洞一三四번지, 同洞 一四번지, 同洞五四번지 및 同洞一一四번지라는 것 이며, 세브란스학생명부의 숙소는 授恩洞 五三번지라는 것이어서, 모두 실지를 조사 했더니, 전에 그 곳에 거주한 형적도 없으며, 春川으로 보낸 서면 중에 있는 주소인 櫻井町二정목—五五번지에 대해서 알아보니, (一二월 五일) 文相彬(一七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宋春根은 작년 三월부터 이 집에서 하숙했으나,一一월 二〇일경에 본적지로 돌아갔다고 했다. 宋이 있던 방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현관 옆의 한 방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사람이 기거한 것 같지 않았으므로, 주인이라고 한 文相彬의 거실을 물으니, 현관 안쪽의 한 방을 가리켰다. 그리고 二층을 물으니 그 二층에는 노모가 있는 방이라고 했다.

일단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전기와 같이 그날 오후에 宋을 체포하고, 주소를 조사해보니 櫻井町二정목—五五번지라고 진술하므로 다시 그 집으로 가서 조사해 보니, 앞에서 주인이라고 응답한 文相彬은 없고, 전기 李貞植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응답했다.

그 이유를 규명하니 文은 현관 안쪽의 一실에 살면서 전차 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조금 전에 취업시간이 되어 나갔는데, 그의 방은 이 집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文이 앞에서 거짓 응답한 이유를 규명하니, 李貞植은 그 때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들으니, 文은 宋을 찾는 사람이 왔으므로 여차 여차 대답했다는 것인데, 李貞植은 文이 소직에게 대답한 말과 같이 진술했고, 어떤 것도 자기들이 그렇게 응답하도록 부탁하거나, 묘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음.

(四) 一二월 五일 오전 ——시 세브란스 학교로 가서 宋이 있는지를 탐색하려고 고향의 친구라고 하면서 朴순사로 하여금 묻게 했더니 휴가에서 돌아와서 아직 학교에는 오지 않았다고 해서 부득이 돌아왔음.

(五) 전기의 방법으로 생각이 미치는 곳을 전부 수사했으나, 宋의 소재를 알 길이 없었다.

五일 오후에 결국 세브란스 의학교에 가서 정식으로 경찰관이라 말하고, 宋의 소재의 유무와 숙소 및 휴가를 내어 귀향중이라면 출발 및 돌아올 일시 등을 물으려고, 本町경찰서에서 세브란스 의학교 안의 상태에 정통한 조선인 형사순사 一명의 원조를 받아서 그 학교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한결음 앞서 간 순사 朴基永은 宋과 만나서(인상 뿐 아니라 宋이 春川에 있을 때 면식이 있었음) 동행하려고 하는 중에 본직 등이 도착하여 그를 예탁유치했다가, 六일 아침에 京城을 출발하여 동행하게 되었음.

위 보고함.

대정 八년 一二월 六일

春川경찰서 근부

순사 日野平藏

순사 朴基永

春川경찰서장

경무 鈴木貢 귀하

宋春根 신문조사

문 : 본적, 주소, 출생지, 신분, 직업, 성명, 연령을 말하라.

답 : 본적 京畿道楊州郡廣積面大池里一五六

주소 京城府櫻井町二丁目一五五

출생지 본적지와 같다.

상민, 농업

宋命善의 二남 宋春根

당 二八세

문 : 작위, 훈장, 연금 등을 가지고 있는가.

답 : 없다.

문 : 지금까지 형사처분, 기소유예 또는 훈계방면된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그대는 어느 학교에 다녔는가.

답 : 一五세 때 京城의 蓮洞 徽新학교에 들어갔다가, 三년째에 다시 청년학관으로 전학하여 보통과를 졸업했다. 그 뒤 대정 二년 九월에 春川으로 가서 미국선교

사 오크바아의 조선어 교사를 하고, 대정 五년 九월에 京城의 延禧전문학교에 들어가서 一년간 강습했다.

그리고 대정 六년 四월 六일 세브란스병원 부속 의학전문학교에 선교사 겸 의사 앤더슨의 알선으로 입학했다.

문 : 학자금은 얼마씩이나 받을 약속으로 입학했는가.

답 : 앤더슨에게서 매월 一〇원씩, 올리버에게서 매월 五·六원씩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문 : 金祚吉과 그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답 : 아무 관계는 없으나, 예수교 신자의 관계에서 알뿐이다.

문 : 그대는 일본어를 대개 아는가.

답 : 대개 안다.

문 : 영어는 어떤가.

답 : 영어도 대개 안다.

문 : 그대는 예수교 신자인가.

답 : 그렇다.

문 : 몇 살 때 세례를 받았는가.

답 : 八세 때에 받았다.

문 :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답 : 자택에서 미국선교사에게서 받았다.

문 : 이 서면은 그대가 쓴 것인가.

여기에서 증제一〇호를 보이다.

답 : 내가 써서 金祚吉에게 보낸 것이다.

문 : 서면 중에 「우리들 중의 한 사람이 직접 거기에서 노정을 찾아 왕래함으로써 그 곳의 통신을 민첩하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히 진술하라.

답 : 우리들 중의 한 사람이란 李日宣을 말하는 것이며, 그 곳이란 上海를 가리킨 것이다.

문 : 그대는 금년 六월 二四일 春川에 와서, 동 一〇일에 京城으로 돌아왔는데, 春川 체제 중에 자금모집에 대하여 누구와 상의했는가.

답 : 자금모집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문 : 그대의 서면에는 「지금 급한 것은 거기로 돈을 보내는 일이라」 운운했는데, 어떤가.

답 : 그것은 上海로 돈을 보내는 일인데, 春川에서 京城으로 돌아온 뒤에 李日宣에게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썼었다.

문 : 그대가 春川으로 간 목적은 무엇인가.

답 : 미국선교사 「앤더슨」 대신으로 온 미국선교사 겸 의사 「힐」에게서 학자금을 받는 상의를 하려고 갔었다.

문 : 「힐」은 승낙했는가.

답 : 「앤더슨」 등에게서 받은 것과 같이 매월 一六원씩 보낸다는 것을 약속했다.

문 : 지금도 또 「힐」에게서 학비를 받는가.

답 : 그렇다.

문 : 금년 八월 一六일 그대가 金祚吉에게 보낸 인쇄물을 어떤 것인가.

답 : 독립신문과 국민신문을 一장씩 보냈다.

문 : 서면 속에 넣어서 보냈는가.

답 : 그렇다.

문 : 서면은 누구에게 부탁해서 보냈는가.

답 : 우편으로 보냈다.

문 : 신보를 東華씨, 允範씨, 池씨에게 보이라고 쓰여 있는데, 允範 및 池는 어떤 사람인가.

답 : 春川에 왔을 때 金祚吉이 말했으므로 允範이라고 적었는데, 어떤 인물인지 모른다. 池란 池達源을 말한 것이다.

문 : 그대는 六월 二五일 春川에 왔을 때에 인쇄물을 휴대했는가.

답 :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문 : 국민신보 및 독립신문을 金祚吉에게 보낸 목적은 어떤가.

답 : 春川에 보낼 때에 金祚吉이 나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했으므로 보냈던 것이다.

문 : 金祚吉은 그대에게 李東華, 기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요구한 것인가.

답 : 그렇다. 金祚吉은 李東華, 기타의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하니 보내 달라고 했다.

문 : 신보의 발행소는 어디인가.

답 : 李日宣이 발행하고 있었는데, 장소는 모른다.

문 : 그대는 金祚吉에게 자전거 및 등사판을 요구했다는데 어떤가.

답 : 春川에 갔을 때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비용에 대하여 金祚吉과 상의했더니, 金祚吉은 돈이 없으니 자전거라도 되느냐고 물으므로 자전거를 보내라고 썼었다. 또 등사판도 金祚吉이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썼었다.

문 : 金祚吉은 자전거 및 등사판을 보냈는가.

답 : 안보냈다.

문 : 왜 안보냈는가.

답 : 나와 李宣日은 헤어졌고, 내가 다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 그대가 春川에 왔을 때에 京城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했는가.

답 : 金祚吉의 자전거포에서 이야기했다.

문 : 金祚吉이 지난번 京城에 갔을 때에 그대가 면회했는가.

답 : 면회하지 않았다.

문 : 그대들은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답 : 세계대세 및 조선과 일본과의 현격으로 보아 확실히 독립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 : 그러면 왜 운동을 하는가.

답 : 사람의 선동으로 했다.

문 :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답 : 李日宣이다.

문 : 그대는 李日宣이 체포된 것을 아는가.

답 : 신문지상에서 알았다.

문 : 李日宣이 체포되었으므로 모든 죄를 李日宣에게 씌우는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이 서면의 봉투를 아는가.

여기에서 그의 주택에서 발견한 증제一〇호의 봉투를 보이다.

답 : 알고 있다.

문 : 「上海法界里馬路天主堂掛李」라고 쓴 사람은 누구인가.

답 : 李日宣이 쓴 것인데, 李日宣을 말한다.

문 : 누구에게 부탁하여 그대에게 보내었는가.

답 : 京城社稷洞 宗橋예배당 교사 金應集이란 사람에게 부탁하여 李日宣이 보냈었다.

문 : 金應集은 현재 京城에 있는가.

답 : 李日宣과 함께 체포되어 현재 감옥에 있다.

문 : 서면의 내용은 어떤가.

답 : 李日宣이 무사히 上海에 도착하여 임시정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듣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문 : 자금의 모집 및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쓰지 않았는가.

답 : 그런 것은 쓰여 있지 않았다.

문 : 李日宣은 어떻게 해서 上海를 왕래했는지 그 상황을 말하라.

답 : 기차로 왕래했다고 들었다.

문 : 李日宣은 上海에서 돌아와서 어떤 말을 했는가.

답 : 임시정부에 갔더니 孫貞道, 安昌浩, 呂運亨 등이 있었는데, 별로 하는 일도 없었으므로 돌아왔다고 했다.

문 : 李日宣은 돌아와서 어떤 운동을 했는가.

답 : 나는 관계하지 않았으므로 전혀 모른다.

문 : 李日宣 외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아는가.

답 : 모른다.

문 : 그대는 여름쯤에 春川에 왔을 때 李東華를 만나서 어떤 말을 했는가.

답 : 金祚吉의 소개로 李東華를 만나서 구제기금에 대해서 말했는데, 李東華는 찬성했었다.

문 : 돈을 냈는가.

답 : 李東華는 찬성하고 돈 二〇원을 주었었다.

문 :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가.

답 : 六월 二六·七일경 오후 七시경에 金祚吉과 함께 李東華를 방문하여 그의 사랑방에서 받았다.

문 : 崔養浩, 李東根에게서도 받았는가.

답 : 양인에게서는 안받았다.

문 : 李東華에게서 받은 돈은 어떻게 했는가.

답 : 七월 一일 오후 二시경 京城 세브란스병원 뒤 운동장에서 李日宣에게 주었다.

문 : 그대는 春川 이외에서는 모집하지 않았는가.

답 : 하지 않았다.

문 : 그밖에 할말은 없는가.

답 : 없다.

위를 통역에게 읽어 주고, 또 통역으로 하여금 이 조서의 취지를 본인에게 알리게 하였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므로 서명 날인하게 하다.

대정 八년 一二월 六일

春川경찰서에서

피고인 宋春根

통역 도경부 徐相瑛

도경부 鈴木貢

金祚吉 신문조서(제5회)

문 : 그대는 金祚吉인가.

답 : 그렇다.

문 : 그대는 宋春根에게서 국민신문 —장을 받았다고 했는데, 宋春根은 독립신문 및 국민신문 각각 —장씩을 보냈다고 했는데 어떤가.

답 : 나는 —장을 받았을 뿐이다.

문 : 그대는 宋春根과 함께 李東華를 방문하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닌가.

답 : 그렇다.

문 : 날짜를 기억하는가.

답 : 금년 六월 二五일에 宋春根이 왔는데, 二·三일이 지난 뒤였다.

문 : 돈은 얼마쯤인가.

답 : 돈은 宋春根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르나, 아마 一〇원쯤으로 생각한다.

문 : 그 돈은 왜 李東華에게서 받았는가.

답 : 자세하게는 모르나, 신문발행의 비용이라고 들었다.

문 : 李東華 외에 돈을 낸 사람이 있는가.

답 : 없다.

문 : 李東根, 崔養浩 등은 어떤가.

답 : 안냈다.

문 : 그대는 독립운동을 할 결심을 한 것은 언제쯤이며 어떤 동기에서 했는가.

답 : 금년 三월경부터였는데, 동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宋春根에게서는 돈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이 있고, 또 신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운동을 할 마음이 생겼다.

문 : 宋春根이 春川에 와서 그대와 만나, 독립운동에 대하여 어떤 말을 했는가. 자세히 말하라.

답 : 宋春根은 나에게 미국에서는 李承晚이 대통령이 되고, 上海에는 임시정부가 있고, 미국에 사는 조선인은 한 사람이 一〇원씩 돈을 내어서 운동중이니, 연맹 회의가 열리면 독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 宋春根이 돈을 알선하라고 부탁한 것도 운동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그대는 돈을 냈는가.

답 : 돈이 없었으므로 안냈다.

문 : 宋春根의 진술로는 그대가 신문을 보내라고 희망했기 때문에 독립신문이나 국민신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어떤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그대는 돈이 없으니 자전거를 기부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인가.

답 : 사실이다.

문 : 그대는 李日宣을 만난 일이 있는가.

답 : 京城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면회했었으나, 李日宣이란 것은 몰랐었다.

문 : 李日宣에게서 독립운동에 대한 말이 있었는가.

답 : 없었다.

문 : 글상자를 보낸 사람은 宋春根일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宋春根의 행위라고 생각했는가.

답 : 상자 위에 「宋」이라는 글자를 썼고, 또 신문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

문 : 그밖에 할말은 없는가.

답 : 없다.

위를 통역에게 읽어 주고, 또 통역으로 하여금 조서의 취지를 본인에게 알리게 하였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므로 서명 날인하게 하다.

대정 八년 一二월 六일

春川경찰서에서

피고인 金祚吉

통역 도경부 徐相瑛

도경부 鈴木貢

李東華 신문조서(제5회)

문 : 그대는 李東華인가.

답 : 그렇다.

문 : 그대는 金祚吉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답 : 재작년 여름쯤 자전거를 타고 연습을 한 관계로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었다.

문 : 그대는 宋春根을 아는가.

답 : 얼굴만을 알고 있다.

문 : 그대는 금년 六월 二六 · 七일경 오후 七시경에 金祚吉과 동반해 온 宋春根에게 돈을 준 기억이 없는가.

답 : 金祚吉에게 돈 二〇원을 주었었다.

문 : 왜 주었는가.

답 : 감옥에 들어간 孫秉熙의 가족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주었다.

문 : 그대는 金祚吉 등이 기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서 주었는가.

답 :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 : 당시 宋春根, 金祚吉 등이 한 말을 상세하게 진술하라.

답 :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입감한 三三명의 가족이 곤경에 처하여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므로 처음에 一〇원을 냈더니 金祚吉이 一〇원은 적다고 해서 二〇원을 주었었다.

문 : 金祚吉 등은 장부라도 가지고 있었는가. 또 영수증을 주었는가.

답 : 장부 같은 것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 또 영수증도 주지 않았다.

문 : 金祚吉 및 宋春根에게서 딴 사람에게서도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가.

답 : 못들었다.

문 : 그대는 먼저 돈 二〇원을 내고, 독립운동을 돋고, 이번은 金祚吉에게서 선언서
七조를 받은 점으로 추찰하니,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답 : 돈의 요구나, 또는 선언서의 배부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을 내^고, 또 배부를 받았던 것이다.

문 : 그대는 春川에서 유력자의 한 사람으로 그런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답 : 실로 미안하다. 잘못 생각했었다.

문 : 金祚吉이 그대에게 국민신문 또는 독립신문 같은 것을 보인 일은 없는가.

답 : 京城에서 왔다고 하면서 신문一장을 가져온 일이 있었다.

문 : 언제쯤인가.

답 : 금년 八월 一七·八일경이었다.

문 : 국민신문이었는가, 독립신문이었는가.

답 : 그것은 기억이 없지만, 보고서 태워버렸다.

문 : 그것을 타인에게 말했는가.

답 : 타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문 : 그대는 이번 金祚吉에게서 받은 선언서를 태웠다고 했지만, 거짓말일 것이다.
어떤가.

답 : 실제로 태웠다.

문 : 그밖에 할말은 없는가.

답 : 없다.

위를 통역에게 읽어 주고, 또 통역으로 하여금 조서의 취지를 본인에게 알리게 하였
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므로 서명 날인하게 하다.

대정 八년 一二월 六일

春川경찰서에서

피고인 李東華

통역 도경부 徐相瑛

도경부 鈴木貢

宋春根 신문조사(제ニ회)

문 : 그대는 宋春根이 틀림없는가.

답 : 틀림없다.

문 : 그대의 부친은 도부(屠夫)로서, 그대는 백정인 것이 사실인가.

답 : 그렇다.

문 : 이 엽서는 누가 보낸 것인가.

여기에서 宋春根의 집에서 발견된 중제一九호 엽서를 보이다.

답 : 그것은 春川 미국인 잭슨의 조선어 교사 池達源이 보낸 것이다.

문 : 엽서 글 중에 「상업상에 관하여 알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대는 그것에 대하여 어떤 답장을 내었는가.

답 : 京城의 학생들이 소요를 일으킨 일 및 京城의 소요 상황을 알려주었다.

문 : 그대들은 암호로 통신할 약속이 되어 있었는가.

답 : 서면으로 약속되었다.

문 : 경찰에 발견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런 수단을 썼는가.

답 : 그렇다.

문 : 다른 친구에게도 그런 약속을 했는가.

답 : 딴 사람에게 한 일은 없다.

문 : 이 인쇄물은 누가 쓴 것인가.

여기에서 금년 八월 一七일 春川읍내에서 발견된 국민신문을 보이다.

답 : 그것은 李日宣이 등사한 것으로 생각한다.

문 : 그대가 金祚吉에게 보낸 것은 이것과 같은 것인가.

답 : 그렇다. 국민신문 외에 독립신문을 보냈었다.

문 : 그대가 李日宣에게서 받은 것이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어디에서 받았는가.

답 : 세브란스병원 의학교 교실 곁에서였다.

문 : 李日宣에게서 대동신보 또는 국민신보를 金祚吉, 혹은 그 밖의 사람에게 보냈다고 듣지 못했는가.

답 : 전혀 못 들었다.

문 : 그대는 이 서면을 썼는가.

여기에서 池達源이 휴대한 것에서 발견된 증제一七호 서면을 보이다.

답 : 그렇다.

문 : 왜 붉은 종이에 썼는가.

답 : 아무 의미도 없다. 외국인 집에서 사용하는 번역용지이다.

문 : 池達源이 李日宣의 집으로 보냈는가.

답 : 아직 안보냈다.

문 : 서면 중에 「海南會는 각각 계속해서 분업중이라」고 한 것은 어떤가.

답 : 上海임시정부를 말한다. 각 부서를 정하고 활동중이라는 뜻이다.

문 : 일본에 있는 李世君을 상회에 참석시키려고 했으나, 사고로 부득이 참석 못한
다고 한 것은 어떤가.

답 : 일본 東京에 있는 왕세자를 가리킨 것이다. 의학교 생도간에 그런 말이 있었다.

문 : 누가 李왕세자를 上海로 데려가려고 했는가.

답 : 그런 것은 모른다.

문 : 누구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는가.

답 : 京城通義洞에 사는 세브란스병원 부속 의학교 三년생 鄭冕錫이라는 사람에게
서 들었다.

문 : 또 편지 속에 나는 활동중 운운이라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답 : 공부중이라는 뜻이다.

문 : 이 편지는 우편으로 보냈는가.

답 : 그렇다.

문 : 이런 인쇄물은 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서 金祚吉의 집에서 발견된 증제一호, 증제二호, 증제三호, 증제四호의 선언
서 등을 보이다.

답 : 전혀 모른다.

위를 통역에게 읽어 주고, 또 통역으로 하여금 조서의 취지를 본인에게 알리게 하였
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므로 서명 날인하게 하다.

대정 八년 一二월 七일

春川경찰서에서

피고인 宋春根

통역 도경부 徐相瑛

도경부 鈴木貢

의견서

江原道春川郡春川面佳淵里九六번지

고물상 金祚吉

당 三九세

同道同郡同面司倉里二八번지

농업 李東華

당 三九세

京城府櫻井町二丁目一五五번지

京城사립세브란스

京鄉의학전문학교 생도 宋春根

당 二八세

江原道春川郡春川面大板里一七九번지

조선어 교사 池達源

당 三一世

同道同郡同面佳淵里九七번지

목수 金敏秀

당 四〇세

同道同郡同面衙洞里

金東羲의 집 거주

예수교병원 미국인 의사 「힐」의 조선어 교사

金光鑄

당 二七세

同道同郡同面司倉里九八번지

잡화상 嚴中煥

당 四四세

同道同郡同面同里一二八번지

예수교 목사 洪種肅

당 四三세

- 一, 형사처분, 기소유예, 또는 훈계방면을 받은 일의 유무
- 一, 피고 金祚吉은 대정 七年 七月 三일 총포화약류 단속령 위반으로 春川지청에서 벌금 一〇원의 처분을 받은 일이 있음.
- 二, 피고 李東華, 동 宋春根, 동 池達源, 金敏秀, 동 金光鎬, 동 嚴中煥, 동 洪鍾肅은 지금까지 형사처분, 기소유예, 또는 훈계방면된 일은 없음.
- 一, 범죄사실

피고 金祚吉은 열심인 예수교 교도로서 현재 전도사의 직에 있으면서 미국 선교사 및 교도의 신뢰를 받고 있음. 아내와 함께 예수교를 위하여 헌신적 활동을 하고 있음.

항상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고, 자칫 위험한 언동을 하므로 주의 중인데,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 몰래 불온문서를 배포하려고 하는 정황을 탐지하고, 특히 경계하고, 그 것에 대비하여 그의 행동을 사찰했음.

一二월 一일 오후 三시에 그의 집으로 가서, 거실의 일부를 검색하니, 벽장 문위 뒤 쪽에 독립선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독립운동가 등 四장으로 一조로 한 불온문서 六통을 발견했음.

동인을 동행하여 신문하여 다음의 사실을 발견했음.

金祚吉은 一一월 二九일 오후 二시경에 소포우편물 春川우편국에서 굴상자로 보내 왔다.

그것을 여니 다수의 독립선언서 및 부속 인쇄물이 묶여 있었으므로 그것을 딴 사람에게 주기 편하도록 四장을 一조로 하여 二〇조를 만들어 그것을 방 안에 숨겨 놓고, 다른 것은 굴상자에 넣은 채로 헛간에 옮겨서 그 위에 키를 덮어서 은폐해 두었음.

제一, 金祚吉은 선언서 등을 春川 및 각지에 배포하여 독립운동을 도발할 목적으로 곧 그 배포에 착수하여 一一월 二九일 오후 四시경에 조끼주머니에 一〇조를 넣고, 春川面佳淵里九七번지 예수교도 金敏秀(당 四〇세)를 방문하여 독립선언서라는 것을 말하고, 숙독한 뒤에 태워버리라 하고 가지고 간 一조를 주었음.

제二, 金祚吉은 金敏秀의 집을 나와 同面佳淵里九八번지 잡화상을 하는 嚴中煥(당 四四세)의 집으로 가서 金敏秀에게 준 바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一조를 주었음.

제三, 그날 오후 四시 二〇분경에 同面司倉里二八번지 전 면장 李東華의 집으로 가서 사랑방에 들어가 밀담하고, 처음에 一조를 주고, 다시 李東華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주기 위하여 六조를 주고 돌아왔음.

제四, ——월 二九일 오후 四시 三〇분경에 미국선교사 「테일러」의 조선어 교사 池達源(당 三一世)이 金祚吉의 영업사무소에 왔으므로 一조를 그에게 주었음.

제五, ——월 二九일 오후 五시경에 미국선교사 겸 의사 「힐」의 조선어 교사 金光鎬라는 사람이 金祚吉의 영업사무소에 온 것을 좋은 기회로 一조를 주었음.

제六, ——월 三〇일 오후 八시경에 교회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京南자동차 정유소 앞 노상에서 목사 洪鍾肅(四三세)에게 一조를 주었음.

제七, ——월 一일 오전 一〇시경에 金光鎬가 京畿道加平으로 갈 때에 加平교회의 권사 李起永 앞 서면 속에 一조를 넣어 金世榮에게 보인 뒤에 태워버리라고 기재하여 보냈음.

제八,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 오후 七시경에 당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京城에서 온 세브란스병원 부속 의학교 생도 宋春根과 함께 春川面司倉里二八번지 李東華를 방문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동지 가족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유하고, 李東華에게서 돈 二〇원을 내게 했음.

제九, 대정 八년 八월 一六일 京城 세브란스병원 부속 의학교 생도 宋春根에게서 독립신문 및 국민신보를 받아서 그것을 李東華 및 예수교 목사 崔兌崑에게 주었음.

제一〇, 선언서가 든 굴상자는 金祚吉의 주택 안에서 발견하여 압수했는데, 발송자는 京城蓬萊町一丁目二번지 宋東秀 철물상에서 보낸다고 되어 있었으며, 또 선언서를 포장한 종이에는 「江原道分 宣五〇〇, 京城三角町六四번지 石明根」이라고 적혀 있었으므로 조사해 보았더니, 宋東秀라는 철물점은 있어지만 전혀 선언서를 발송한 일은 없었고, 또 京城三角町에 石明根이라는 사람은 없었음.

金祚吉은 전혀 발송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음.

굴상자를 받아서 아내와 함께 그것을 열었더니 선언서였으므로 각처로 배포할 결심을 하고, 또 실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음.

발송자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으나, 宋春根이 金祚吉에게 보낸 서면 증제一〇호 및 선언서와 함께 굴상자에 넣은 종이쪽지 증제六호 및 증제八호를 보였더니 필적이 동일하다고 대답하여 宋春根의 행위인 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확실한 대답을 피하

여 죄증을 은폐하려는 마음이 굳음을 보였음.

제一一, 金祚吉의 주택 안에서 「伊藤公遭難圖」, 불온창가를 발견했는데, 金祚吉은 伊藤傳文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사서 보존했다고 하며, 또 불온창가는 글뜻이 흥미가 있었으므로 수시로 읽었지만 아무런 악의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또 일기 중에도 李完用 외 수명의 성명을 열기하고 있어서 위험사상이 치열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제一二, 金祚吉은 平安南道 平壤 태생으로 성정이 강건집요하고 또 결심이 굳은 것 같고 확실하여 숨길 수 없는 사실도 그것을 부인하려고 했음.

또 그가 배포선전하는 방법이 매우 교묘하여 加平교회 李起永에게 보낸 선언서는 봉투에 넣어서 金光鎬에게 부탁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 보인 뒤에 태워버리라고 첨언하여 놀랄만 했음.

제一三, 金祚吉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동기로는 금년 三월이후 각처에서 소요사건이 속출하고, 또 宋春根 등에게서 자금의 주선을 부탁 받고, 또 신문을 보내 왔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다수의 교도가 감옥에 들어간데 대하여 특히 동정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음.

제一四, 金祚吉의 아내도 또 열성적인 예수교도로서 金祚吉이 군상자에서 선언서를 꺼낼 때 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아내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았으므로 일단 조사했는데, 남편의 행위는 조선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나,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음.

一, 李東華는 春川에서 유력자의 한 사람인데, 근자에 金祚吉과 친교하여 가끔 중국 요리점, 또는 각인의 집에서 회합하는 등 매우 용의점이 있으며, 다음의 사실이 있음.

제一,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 오후 七시에 金祚吉 및 宋春根 양인의 방문을 받고, 양인에게서 독립운동자금의 상의를 받고, 곧 그것에 찬동하여 돈 二〇원을 宋春根에게 주었음.

제二, 대정 八년 八월 一七일경에 金祚吉에게서 국민신보를 받아서 그것을 숙독했음.

제三,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 오후 四시 二〇분경에 金祚吉의 내방을 받고, 독립 선언서 七조를 받아, 그것을 타인에게 교부 선전하려고 하다가 마침 金祚吉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선언서는 전부 태워버렸다고 주장했음.

주택을 검색했으나, 발견되지 않았음.

누구에게 배부할 예정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심 중에 예기한 곳이 있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임.

春川에서 유식한 사람인 그가 그런 계획을 하게 된 사실은 매우 한심한 일이므로 엄중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一, 피고 宋春根은 어렸을 적에 미국인에게서 세례를 받아 예수교도가 되었고, 京城의 徽新학교, 청년학관, 廷禧학교 등에서 배우고, 혹은 미국 선교사의 조선어 교사가 되어 영어를 연습하고, 또 학자금을 얻어서 대정 六년 四월 六일 京城의 세브란스병원 부속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동교 三학년생임.

그는 백정의 집에서 태어났고, 고향에는 처자가 있으나 京城에서 여학생과 정을 통하여 현재 동거하면서 본처와 이혼하려고 하는 배덕행위자임.

금년 三월 아래로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는 李日宣 및 金應集 등과 함께 獨립운동에 열중하여, 오로지 京城에서 운동한 자임.

제一, 대정 八년 八월 一二일 春川面佳淵里 金祚吉에게 국민신보 및 獨립신문을 우송하여, 그것을 예수교도 및 유력자에게 배포하게 하였음.

제二, 그 해 六월 二六일 오후 七시에 金祚吉을 동반하고 李東華의 집을 방문하여 운동자금 二〇원을 받아서, 그것을 李日宣에게 주었음.

제三, 金祚吉에게 京城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등사판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는데, 金祚吉은 그것을 승낙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하고 발각되었음.

제四, 上海임시정부와 연락한 사실은 임시정부로 간 李日宣과 왕복한 서면의 봉투로 보아 명백했으나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음.

제五, 宋長根은 예수교도와 비밀통신을 함에 있어서 상업문의 사용을 약속했음.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근인의 상황은 어떠하오, 그런데 海商會는 각각 분업 중으로 여전히 계속중이며 일본에 있는 李世君은 商會에 왕래하고자 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였소, 운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게 했더니 上海임시정부는 여전히 존속하면서 각지에서 활동중임. 또 東京에 사는 李王세자는 上海로 유인하려고 했으나, 사고로 이루어지 못했다는 뜻이었음.

본건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추궁했더니 세브란스병원 의학교 三학년 鄭冕錫(당 二八세)에게서 들었다고 하므로 조회했음.

제六, 조선독립은 연맹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운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조선인유식자 일반의 바람이라고 진술하여, 추호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또 어느 때에는 李日宣이 감옥에 들어간 뒤에는 운동의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金祚吉에게 보낸 서면 증제一〇호 및 池達源 앞으로 ——월 二八일자 서면 증제一七호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결심이 강고하다고 단정할 수 있음.

제七, 金祚吉에게 보낸 글상자에 들어 있는 선언서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 필적 등으로 미루어 그의 소행이라고 추단하지만, 사실은 진술하고 있지 않음.

제八, 金祚吉 제六회 신문 때에 그의 진술에 의하면 금년 ——월 二二일 오후 三시 경에 그의 부재중에 영업사무소 안에 한 통의 서면을 놓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보니 면담의 요건이 있어서 왔지만 만나지 못하고 京城으로 간다고 적고, 韓基東이라고 했으므로 발송자로 마음가는 것은 宋春根 외에 없어 그 사람이라고 했음.

조사했더니 李爛公사건으로 체포된 사람 중에 韩基東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가 선언서를 金祚吉에게 발송한 사실을 추단할 자료는 없음.

본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조회 중에 있음.

一, 池達源은 미국선교사 「잭슨」양의 조선어 교사를 하고 열성 예수교도로서 교도 간에 신망이 있는 자임. 그는 표면상 온순하나 이면으로는 독립운동에 찬성하고 있음 이 宋春根과 왕복한 서면에 의하여 명백함.

제一, 대정 八년 ——월 二九일 오후 四시 三〇분경에 金祚吉의 영업사무소에서 독립선언서 —조를 받아서 그것을 휴대해 가지고 가서 그것을 숙독한 뒤에 미국선교사 「잭슨」의 집 난로에 넣어 태워버렸음. 타인에게 위험사상을 선전한 사실이 명료하지 못함.

一, 洪鍾肅은 京城 및 開城에서 종교교육을 받고, 목사로 추천되어 상당한 학식이 있음.

일찍이 開城에서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빚을 졌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春川으로 이전해 온 사람임.

위험사상이 왕성한 것은 開城에서 교도와 왕복한 서면으로 추단할 수가 있음.

제一, 대정 八년 ——월 三〇일 오후 八시경부터 春川예수교회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金祚吉에게서 독립선언서 —조를 받아, 그것을 숙독한 뒤에 金祚吉이 말한대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자택 온돌 아궁이에 넣어서 태웠음.

그밖에 선전한 사실은 명백하지 못함.

一, 金敏秀는 예수교도로 목수를 하고 있는데 다소 학문의 소양이 있고 교도간에 신망이 있는데, 다음의 사실이 있음.

제一, ——월 二九일 오후 四시경에 金祚吉이 찾아와서 독립선언서 —조를 주므로 그것을 받아서 숙독한 뒤에 소각했음.

一, 金光鎬(당 二七세)는 京城의 청년회관 등에서 배워서, 영어 및 일본어를 알고, 곧 목사로 임명될 위치에 있음.

현재 미국선교사 겸 의사「힐」의 조선어 교사로 위험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임.

제一, 대정 八년 ——월 二九일 오후 五시경에 金祚吉의 영업사무소에서 金祚吉에게서 독립선언서 —조를 받아, 그것을 「힐」의 집에서 숙독하고 난로에 넣어 태워버렸음.

제二, 그 해 ——월 一일 오전 —○시경에 金祚吉에게서 선언서가 든 서면을 받고, 그것을 加平으로 가져가는 도중에 발견되어 압류되었음.

그는 타인에게 선전한 증적은 없고, 또 서면의 내용을 모르고 가져간 것임.

一, 嚴中煥은 잡화상으로 중류의 상인임.

대정 八년 ——월 二九일 오후 四시가 지나서 金祚吉이 왔는데, 金祚吉은 선언서 —조를 꺼내어 그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을 받아 읽고는 그것을 태워버렸음.

一, 증거

각 물건 압류목록에 기재된 물건, 피고인 金祚吉, 동 李東華, 宋春根, 동 洪鍾肅, 동 金敏秀, 동 池達源, 동 嚴中煥, 동 金光鎬, 증인 姜安羅, 동 李起永, 동 金興範, 동 崔兌崑, 동 金振榮, 참고인 韓씨, 동 李敦議의 각 진술, 순사 黑田德松, 동 村上喜代 및 동 日野平藏, 동 東條精

一, 동 伊藤龜藏, 동 山田常治, 동 米田直樹, 동 後藤幾馬, 동 金在興, 경부 徐相瑛의 각 범죄수사 보고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함.

一, 피고인 金祚吉, 동 李東華, 동 宋春根의 행위는 제령 제七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제一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사량함.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一, 피고인 池達源, 동 金敏秀, 동 洪鍾肅, 동 金光鎬는 金祚吉의 행위에 찬동하고, 선언서를 읽고, 그것을 태워버려서 증거를 인멸하고, 구두로 다른 사람에게 독립운동

선전을 하려고 했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선전한 사실이 명료하지 않으므로 특히 기소유예의 처분을 해 주기 바라며, 또 嚴中煥은 종교관계가 없고, 평소에 위험사상을 포지한 상황이 없으니 불기소처분을 하기 바람.

대정 八년 一二월 九일

春川경찰서에서

도경부 鈴木貢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

검사 北條久清 귀하

제一九九호

사건송치서

도경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구속	金祚吉
발각원인	인지	"	李東華
수리	대정 八년 一二월 一일	불구속	宋春根
유치	대정 八년 一二월 一일 대정 八년 一二월 三일(洪) 대정 八년 一二월 六일(宋)	"	池達源
방면	대정 八년 一二월 五일 池達源 金敏秀 洪鍾肅	"	金敏秀
조사중 또 는 조희사항	대정 八년 一二월 五일 池達源 金敏秀 洪鍾肅	"	洪鍾肅
비고		"	金光鎬
		"	嚴中煥

위 피고사건을 별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냄.

대정 八년 一二월 九일
春川경찰서장
경부 鈴木貢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
검사 北條久清 귀하

宋春根 신문조서(제三회)

문 : 그대는 宋春根이 틀림없는가.

답 : 틀림없다.

문 : 그대는 정사범 피고인 李日宣을 春川에서 도주시킨 것이 아닌가.

답 : 그렇지 않고, 마침 春川에 사는 미국선교사 겸 의사 「힐」씨가 「스코필드」씨에게 조선어 교사가 필요하다는 서면이 와서 「스코필드」씨가 나에게 상의가 있었으므로 李日宣에게 말해서 李日宣이 春川으로 오게 되었음.

문 : 당시 李日宣이 경찰의 수색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는가.

답 : 알았다.

문 : 李日宣은 어떤 죄로 도주하고 있었는가.

답 : 조선독립의 소요사건에 관계된 국민신보를 발행하고, 또는 上海의 임시정부에 왕복한 관계로 경찰의 체포를 두려워해서 도주해 있었다.

문 : 미국선교사 「스코필드」씨는 李日宣이 범죄가 있어서 도주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답 : 그것은 몰랐었다.

문 : 李日宣은 어떤 가명으로 春川에 있는가.

답 : 金漢柱라고 했다.

문 : 李日宣은 그대 및 「스코필드」의 주선으로 春川으로 도주시켜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답 : 「스코필드」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나, 나에게는 아무 말이 없었으며, 또 편지도 없었으므로 어떤 생각이었는지 나로서는 모른다.

위를 조선어로 신문하고, 또 조선어로 조서의 취지를 본인에게 알려 주었더니 틀림 없다고 진술하므로 서명 날인하게 하다.

대정 八년一二월 一〇일

春川경찰서에서

피고인 宋春根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도순사 黑田德松

金祚吉 신문조서

피고인 金祚吉

위 피고인에 대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八년一二월一一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열석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 연령은 金祚吉, 三九세

신분, 직업은 자전거 영업

주소는 春川郡春川面佳淵里 九六

본적지는 위와 같다.

출생지는 위와 같다.

문 : 위기, 훈장, 종군기장, 연금, 은급 또는 공직에 있지 않은가.

답 : 없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대정 七년 六월 二七일에 수렵단속규칙 위반죄로 春川지청에서 벌금 一〇원의 처분을 받았다.

문 : 피고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답 : 一〇세부터 一七세까지 한문선생에게서 한문을 배웠다.

문 : 피고가 믿는 종교는 무엇인가.

답 : 기독교 남감리파에 속한 교회의 신도인데, 一〇년 전부터 믿고 있다.

문 : 京城의 宋春根과는 친숙한 사이인가.

답 : 각별히 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그가 春川에 오면 우리 집에 방문하므로 아는 사이이다.

문 : 금년一一월二九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기타 선언서 등의 불온 문서가 든 굴상자를 받은 일이 있는가.

답 : 그렇다. 받았다.

문 :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답 : 그것은 누구인지 모른다.

문 : 그 소포의 포장에는 발송인 성명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는가.

답 : 京城蓬萊町 宋東秀라고 적혀 있었다.

문 : 宋東秀와는 친한가.

답 : 전혀 모른다.

문 : 모르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보내 왔는가.

답 :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문 : 그러면 왜 그것을 열어 싸인 문서를 배포했는가.

답 : 그것은 그 문서 중에 다른 사람에게 배포해 달라는 의뢰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 : 피고는 조선독립운동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가.

답 : 운동하고는 있지 않다.

문 : 그러면 왜 그 인쇄물을 딴 사람에게 배포했는가.

답 : 의뢰장이 있었기 때문에 배포했던 셈이다.

문 : 그 배포처 및 월일을 말하라.

답 :一一월二九일 金敏秀에게 一조, 李東華에게 七조, 金光鎬에게 一조, 池達源에게 一조, 洪鍾肅에게 一조이다.

그리고一二월一일에는 金光鎬에게 부탁하여 加平郡 李起永에게 一조를 보냈다.

문 : 위와 같이 각각 배포한 것은 어떤 목적인가.

답 : 그것은 인쇄물에 기재되어 있는 취지를 일시에 알릴 생각이었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위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다.

같은 날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李東華 신문조사

피고인 李東華

위 피고인에 대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八년 一二 월 一一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열석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 연령은 李東華, 三九세

신분, 직업은 농업

주소는 春川郡春川面司倉里二八

본적지는 위와 같다.

출생지는 위와 같다.

문 : 위기, 훈장, 종군기장, 연금, 은급 또는 공직에 있지 않은가.

답 : 없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피고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답 : 一一세 때부터 一八세까지 한문을 배웠다. 그 뒤 보통학교에서 한문을 一년쯤 배웠다.

문 : 예수교 신자인가.

답 : 어떤 신앙도 없다.

문 : 金祚吉이라는 사람과 이전부터 친숙한 사이인가.

답 : 알고는 있지만 친한 것은 아니다.

문 : 宋春根과는 어떤가.

답 : 재작년경부터 예수교 목사로 이웃집에 살았었는데 친하지는 않다.

문 : 금년 六월 二六일에 宋春根과 金祚吉 양인이 피고의 집으로 가서 돈 二〇원을
받았다는게 그런가.

답 : 그렇다.

문 : 그러면 친한 것이 아닌가.

답 : 宋春根과 인사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다.

문 : 그 돈은 어떤 돈인가.

답 : 그것은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六월중에 金祚吉과 宋春根 양인이 와서 孫秉熙
이하 三二인이 감옥에 들어간 뒤에 가족이 곤란하므로 그 생활비로 내어 달라고 했
으나, 일단 거절했다. 그러나 그 뒤에 金祚吉이 와서 꼭 달라고 하므로 주었었다.

문 : 그 돈은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上海에 설립된 임시정부로 보내는 돈이 아닌가.

답 : 그렇지 않다.

문 : 금년 一월 二九일 金祚吉에게서 조선독립운동의 선언서 四장 一조의 것 七조
를 받은 일이 있는가.

답 : 그렇다. 받았다.

문 : 왜 받았는가.

답 : 金祚吉이 와서 주었는데, 지금 바쁘다고 했더니, 그러면 두고 가겠다고 하므로
그냥 받아 놓았다.

문 : 그것은 어떻게 했는가.

답 : 金祚吉의 집에서 가택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무서워서 우리 집 선
반에 둔 것을 불태워버렸다.

문 : 누구에게 그것을 보였는가.

답 :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문 : 피고가 혼자 보는 것이라면 一조이면 될 것이 아닌가.

답 : 金祚吉이 어디엔가 보일 곳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몇 장을 두고 간 것이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위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다.

같은 날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宋春根 신문조서

피고인 宋春根

위 피고인에 대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八년 一二 월 一一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열석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 연령은 宋春根, 二八세

신분, 직업은 의학생

주소는 京城府櫻井町二의 一五五

본적지는 榎州郡廣積面大地里五六

출생지는 위와 같다.

문 : 위기, 훈장, 종군기장, 연금, 은급 또는 공직에 있지 않은가.

답 : 없다.

문 : 피고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답 : 京城의 儀新학교, 청년학관에서 三년간, 京城의 延禧학교에서 一年간 재학하다가, 그뒤 京城의 세브란스병원 부속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그 학교의 三학년생이다.

문 : 金祚吉 및 李東華와는 이전부터 친숙한 사이인가.

답 : 내가 春川에 있을 때 교회관계로 金祚吉과는 친했으나, 李東華는 말은 들었으나 몰랐다.

문 : 금년 六월 二六일에 金祚吉과 함께 李東華의 집으로 가서 돈 二〇원을 받은 일이 있는가.

답 : 그렇다.

문 : 그것은 어떤 돈인가.

답 : 그것은 내가 春川교회로 왔을 때 구제자금의 모집을 부탁 받았는데, 李東華에게서 그 비용으로 받았던 것이다.

문 : 그 돈은 上海에 설치된 임시정부로 보내는 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

답 :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대로 구제비로 모았었다.

문 : 금년 八월경에 조선독립에 대한 불온기사가 있는 국민신보 및 독립신문을 金祚吉의 집으로 보낸 일이 있는가.

답 : 그것은 八월에 내가 京城으로 돌아갈 때 金祚吉이 무엇이나 특이한 일이 있거든 알려달라고 했으므로 보냈었다.

문 : 금년 一一월 二九일에 조선독립에 대한 선언서 四장一조의 그 五〇〇조를 굴상자에 넣어 宋東秀의 이름으로 金祚吉 앞으로 보낸 일이 있는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피고가 보낸 것이 아닌가.

답 : 전혀 모른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위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다.

같은 날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대정 八년 一二월 一二일

京城本町경찰서 근무

순사 尹海成

京城本町경찰서장

경시 千田貞治귀하

鄭冕錫에 관한 건

위 사람을 명에 의하여 동행하고, 조사한 바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보고함.

다음

一, 신분은 양반으로 직업은 세브란스병원 의학교 三년생인데, 원적지는 京城府昌成洞一四六번지이며, 현주소도 위와 같음.

二, 연령 당 三〇세임.

三, 본인의 부친 鄭斗源은 현재 군령부 부속 육군참령임.

四, 원래 宋春根과는 깊은 교제는 없고, 다만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宋의 원적지 및 현주소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음.

五, 원래 通義洞 二八번지에서 금년 一월경에 현주소로 이전했음.

六, 「海商會 分業」이라든지, 「大日本李世君」이라는 것은 宋에 대해서 말한 일도 없고, 또 이 사건을 모른다고 했음.

七, 그 학교에서는 京城 출신 학생은 현재 三명 정도가 있으나, 시골에서 입학한 학생은 평시부터 어떠한 일도 결코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뿐아니라, 이야기도 안하며, 다만 보통 교제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음.

이상

대정 八년 一二월 七일

春川경찰서장

京城本町경찰서장 귀하

불온문서에 관한 건

금월 一일 위 사건에 대하여 조회해 둔 바 宋春根이 낸 池達源 앞의 서면의 건에 대하여 宋春根을 신문하니, 다음과 같이 진술하므로, 세브란스 의학교 三년생 鄭冕錫에 대하여 조사해 주기 바라와 조회함.

一, 「海商會 分業」 운운은 上海임시정부가 계속하고, 또 활동중이라는 것을 쓴 것이고, 「大日本李世君」이란 李왕세자 전하를 上海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사고로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이나, 사실은 모른다. 다만 세브란스 의학교 생도 중에 전파되어 있는 풍설이므로 서면에 그와 같이 쓴 것이라고 宋은 그 학교 三학년생인 京城府通義洞 출신 鄭冕錫(당 二八세정도)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했음.

대정 八년 一二월 一一일
 京城本町경찰서장
 春川경찰서장 귀하

池達源 신문조서

피고인 池達源

위 피고인에 대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八년 一二월 一五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열석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 연령은 池達源 三一세

신분, 직업은 예수교 조선어 교사

주소는 春川郡春川面大板里七九

본적지는 京城府清雲洞一一九

출생지는 위와 같다.

문 : 위기, 훈장, 종군기장, 연금, 은급 또는 공직에 있지 않은가.

답 : 아니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피고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답 : 관립 安東소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소학교에 입학하여 三학년을 수학하고, 사관학교에 전학하여 三학년 때에 군대해산으로 퇴학했다.

문 : 피고는 무슨 종교를 믿는가.

답 : 一二년 전부터 예수교 남감리파를 믿고 있다.

문 : 피고는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가.

답 : 독립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나, 조선인으로서 바라고 있다.

문 : 그러므로 독립운동을 하는가.

답 : 그런 일은 안한다.

문 : 金祚吉 및 宋春根 등과 친숙한 사이인가.

답 : 알고는 있지만, 별로 친숙한 사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 : 그들과 조선의 독립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 : 나는 결코 그런 일은 없다.

문 : 이것은 피고가 宋春根과 왕복한 서면인가.

이 때 영제一七七호의 一七을 보이다.

답 : 그렇다.

문 : 이 서면에 있는 「근일의 商況은 전과 같은데, 海商會는 각각 계속해서 分業中」
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답 : 나도 그것을 몰라서 그냥 두었는데, 경찰서에서 압류해 갔다.

문 : 모르는 것을 말해 왔을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

답 : 담요를 돌려달라고 宋春根이 말한 편지로 그 뜻은 전혀 모른다.

문 :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李世君을 商會에 참석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답 : 그것도 모른다.

문 : 李世君이란 왕세자 전하로 그 전하를 上海임시정부에 참석시키려했으나, 사고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 아닌가.

답 : 그런 뜻인지 모른다.

문 :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암호로 모르는 것을 적어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답 :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 일이다.

문 : 그러나 宋春根은 독립운동에 대하여 항상 위와 같은 암호를 사용하여 서면을
왕복하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

답 : 그것은 宋長根이 나에게 암호로 통신한 것처럼 잘못된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
한다.

문 : 피고가 전혀 아무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편지로 그런 것을 써 보낼리가 없
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진술하라.

답 : 「海商會」라고 한 것은 上海의 일로 상상은 했다. 그것은 「海의 會」라고 했으니
上海의 일로 생각했는데, 임시정부라는 것은 몰랐다.

문 : 그러면 「李世君」의 뜻은 어떤가.

답 : 그것은 전혀 모른다.

문 : 피고는 「海商會」라는 것은 上海의 일이라고 상상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宋春根, 金祚吉, 또는 기타의 사람들과 그런 암호에 대하여 듣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

답 : 전혀 그런 일은 없다.

문 : 선언서 四장一조를 받은 일이 있는가.

이 때 영제一七七호의 一내지 四를 보이다.

답 : 그렇다. ——월 二九일에 金祚吉에게서 받았다.

문 : 무슨 불일로 金祚吉의 집에 갔는가.

답 : 그 때는 교회에 온 손님에게 금폐 등을 주기로 되었는데, 내가 준비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러 갔었다. 金祚吉의 자전거점포의 방에서 받았다.

문 : 그 때 누가 거기에 있었는가.

답 : 洪鍾肅이 있었다.

문 : 그 때 무엇이라고 하면서 주었는가.

답 : 洪鍾肅도 동석해 있었는데, 줄 때에 金祚吉은 양복 호주머니에서 인쇄물을 접 은대로 나에게 주었다.

문 : 그 때 洪鍾肅은 그 인쇄물을 보고 있었는가.

답 : 洪鍾肅도 있었는데, 그도 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른다. 하여튼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문 : 金祚吉은 그 때 이것을 친한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면서 준 것이 아닌가.

답 : 다만 가져가라고 했을 뿐이다.

문 : 그 전후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고 말한 일이 없는가.

답 : 별로 아무 말도 없었다.

문 : 그 받은 것은 어떻게 했는가.

답 : 수교회에 가서 꾀 보니, 그런 것이었으므로 의심을 받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곧 태워버렸다.

문 : 태운 날짜 및 장소는 어떤가.

답 : ——월 二九일 오후 五시가 지나서 예수교 사무소의 난로 속에 넣어서 태웠다

문 : 그것을 누구에겐가 보인 것이 아닌가.

답 : 누구에게도 안보였다.

문 : 洪鍾肅에게 그 문서에 대하여 말을 하거나, 또는 들은 말은 없는가.

답 : 아무 것도 못들었으며, 또 말한 일도 없다.

문 : 그 서류를 태운 것은 그 받은 날이 아니지 않은가.

답 : 그것을 받고서 —시간쯤 뒤에 확실히 태워버렸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위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다.

그날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金光鎬 신문조사

피고인 金光鎬

위 피고인에 대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八년 一·

월 一五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열석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 연령은 金光鎬 二七세

신분, 직업은 예수교 조선어 교사

주소는 春川郡春川面衛洞里一九八

본적지는 加平郡邑內面邑內里五〇三

출생지는 위와 같다.

문 : 위기, 훈장, 종군기장, 연금, 은급 또는 공직에 있지 않은가.

답 : 아니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피고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답 : 一五세 때 加平관립소학교에 입학하여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京城 鍾路의 청년회관을 졸업했다.

문 : 피고가 믿는 종교는 무엇인가.

답 : 一九세 때부터 예수교 남감리파를 믿고 있다.

문 : 金祚吉과는 전부터 친한 사이인가.

답 : 같은 신자로 친하게 지낸다.

문 : 加平예수교회 권사 李起永에게 金祚吉이 보내는 봉서를 부탁 받은 일이 있는가.

답 : 그렇다.

문 : 그 날짜는 언제인가.

답 : 一二월 一일이다.

문 : 그것은 피고가 加平으로 갈 일이 있었는가. 혹은 특별히 부탁을 받았는가.

답 : 내가 가르치고 있는 서양인은 京城으로 가서 부재중이었으므로 그 동안을 이용하여 자택인 加平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때 金祚吉이 부탁했었다.

문 : 그 서면은 어디에서 받았는가.

답 : 一二월 一일 정오경에 金祚吉이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왔었다.

문 :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답 : 그것은 봉투에 넣어 봉해져 있었으므로 내용은 모른다.

문 : 그 내용은 조선독립에 관계되는 선언서, 기타의 부속서류가 아니었던가.

답 :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加平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비로소 그런 문서라는 것을 알았다.

문 : 피고는 그 전후에 金祚吉에게서 그것과 같은 불온문서를 본 일이 있지 않은가.

답 : 一一월 二九일 오후 二시경에 金祚吉의 집에서 불온문서를 그가 보여준 일이 있다. 그때 四장 一조를 자기에게 주면서 보고는 태워버리라고 했으므로 그날 곧 내가 항상 출입하는 서양인 집의 난로 속에 넣어 태웠다.

문 : 출입하고 있는 서양인은 누구인가.

답 : 「힐」의 집이다.

문 : 金祚吉의 집으로 간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답 : 그는 전부터 친한 사이이고, 매일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러 간 것 이었다.

문 : 그 때 누군가 곁에 있던 사람은 없었는가.

답 : 아무도 없었다.

문 : 문서를 준 곳은 어디인가.

답 : 그의 집 방에서 였다.

문 : 金祚吉이 준 문서는 이것과 같은 것인가.

이 때 영제一七七호의 — 내지 四를 보이다.

답 : 그렇다.

문 : 金祚吉이 그 문서를 줄 때에, 기타의 친한 사람에게 주라든지, 혹은 그 내용의 취지를 말해 주라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답 : 보고 나서는 태우라고만 했었다.

문 : 피고는 그것을 타인에게 말한 일도 없는가.

답 : 보인 일도 없고, 또 말한 일도 없다.

문 : 金祚吉은 그 문서가 어디에서 왔다는 말은 없었는가.

답 : 그것은 못들었다.

문 : 피고가 加平에 가셨간 李起永에게서는 그 문서에 대하여 어떤 말을 들었는가.

답 : 金祚吉이 부탁한 문서는 李起永에게 주기 전에 경찰에게 압류되었으므로 그는 어떤 문서인지 모른다.

문 : 피고는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가.

답 : 희망은 조선인이므로 가지고 있다. 다만 될지 않될지는 모른다.

문 : 그러면 이전부터 金祚吉 등과 함께 운동에 대하여 다소 활동한 것이 아닌가.

답 : 희망을 가졌을 뿐으로 운동을 한 일은 없다.

문 : 宋春根은 알고 있는가.

답 : 宋春根은 청년학관에 내가 학생일 때의 동창이므로 말로는 알고 있으나, 친숙 한 사이는 아니다.

문 : 지금까지 宋春根과 편지의 왕복을 한 일은 없는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上海의 조선임시정부를 「海商會」라 하고, 왕세자전하를 「李世君」이라 한다거나 하는 암호를 사용하여, 京城이나 기타 방면의 동지와 서면의 왕복을 한 일은 없는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그러나 그 암호의 뜻은 알고 있는가.

답 : 아무 것도 모른다. 또 그런 암호의 뜻에 대하여 들은 일도 없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위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다.

그날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嚴中煥 신문조서

피고인 嚴中煥

위 피고인에 대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八년一二월 一六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열석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 연령은 嚴中煥 四四세

신분, 직업은 잡화상

주소는 春川郡春川面佳淵里九八

본적지는 위와 같다.

출생지는 同郡同面司倉里

문 : 위기, 훈장, 종군기장, 연금, 은급 또는 공직에 있지 않은가.

답 : 아니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피고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답 : 내가 九세 때부터 一〇여년 한문을 배운 것 외에는 없다.

문 : 피고는 어떤 종교를 믿는가.

답 :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

문 : 金祚吉과는 이전부터 친숙한 사이인가.

답 : 알고는 있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다.

문 : 金祚吉에게서 이것과 같은 서류를 받았는가.

이 때 영제一七七호의 一 내지 四를 보이다.

답 : 그렇다, 받았다.

문 :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가.

답 : 금년 一一월 二九일 오후 四시경에 金祚吉이 자택으로 가지고 왔었다.

문 : 金祚吉과는 지금까지 서로 왕래하고 있는가.

답 : 왕래는 하고 있지 않다.

문 : 각별히 친하지도 않고, 왕래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와 같은 비밀서류를 가지고 올 리가 없지 않은가.

답 : 金祚吉의 집은 자택의 바로 앞에 있으니, 그런 관계로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

문 : 그 때 누군가 피고의 집에 있은 사람이 있는가.

답 : 아무도 없었다.

문 : 金祚吉은 그 외에도 불일이 있어서 왔는가.

답 : 다른 불일이 없었다. 그것을 가지고 왔을 뿐이다.

문 : 金祚吉은 그 때 이 서류를 무엇이라고 하면서 주었는가.

답 : 다만 이것을 보라고 했을 뿐이다.

문 : 그 때 피고에게 金祚吉은 이것을 보고 딴 사람에게 보이라든가, 혹은 이 문서의 취지를 말해 주라든가, 하는 말은 전하지 않았는가.

답 : 그런 말은 없었다.

문 : 그러면 그 전후에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그 서류는 어디에서 왔다고 했었는가.

답 : 어디에서 왔다는 말은 없었고, 또 나도 묻지 않았다.

문 : 그 서면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는가.

답 : 받아보니 불온문서이므로 자택에 두면 뒷날 말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곧 화로에 넣어버렸다.

문 : 宋春根을 아는가.

답 : 모른다.

문 : 피고는 조선의 독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 : 나는 잡화상이니 독립이 되고 않되고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독립 희망의 의사 는 없다.

문 : 上海에 조선독립의 임시정부가 있고, 그 상황 등의 통신에 대하여 비밀암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는가.

답 : 그런 것은 모른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위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다.

그날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대정 八년 —二월 ——

孝村경찰관주재소

순사 野田勳三郎

楊州경찰서장

경부 牧田出夫 귀하

신원조사의 건 복명서

京畿道楊州郡廣積面佳納里一五五번지

京城세브란스병원 의학전문학교 생도

宋春根

당 二六세

위 사람에 대하여 春川경찰서의 조회로 신원조사를 하라는 명을 받고, 조사한 바 宋春根은 九세 때, 즉 명치 三〇년 봄부터 京城府授恩洞一三四번지에 거주하는 친형 宋景根의 집으로 나가 있었는데, 그 뒤 본적지인 본가에는 귀향한 일이 없으며, 동인의 성행, 경력 및 가정이나 생활상황 등을 상세히 알 수 없어 조사불능이므로 이에 복명함.

그리고 조회문의 위 주소지 및 성명, 연령이 다음과 같이 상위하므로 첨언함.

一, 본적 榆州郡廣積面佳納里一五五번지로 한 것은 一五六번지의 잘못임.

一, 성명 宋春根이라고 함은 통칭으로 본명은 宋鳳海, 연령 二六세로 한 것은 당三一세(명치 二二년一二월 八일생)와 상위함.

宋春根 신문조서(제二회)

피고인 宋春根

위 피고인에 대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八년一二월 一六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열석하여 검사는 전회에 이어 전기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宋春根인가.

답 : 그렇다.

문 : 현재 서대문감옥에 들어가 있는 李日宣 및 金應集은 이전부터 친한 사이인가.

답 : 李日宣, 金應集은 다 三·四년 전부터 종교관계로 예배당 등에서 항상 만나서 알게 되었다. 그 뒤 京城에서도 가끔 만나는 일이 있어서 친하다.

금년 여름경에 내가 하기방학을 이용하여 春川에 갔다. 그것은 내가 조선어 교사를 하고 있는 서양인에게서 학자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사 겸하여 왔다.

그 때 월일은 잘 모르나, 아마 금년 七月경으로 생각한다. 李日宣과 세브란스병원 안에서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올봄 이래로 소요사건 때문에 학생이 감옥에 들어가고 가족들이 모두 곤경에 처하여 있는 모양이니, 그 구제금을 모집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대가 만약 春川에 가거든 친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

한 일이 있다. 또 金應集은 앞에서 말한대로 그 뒤에는 별로 왕복은 하지 않았는데, 금년 七月경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나, 上海에서 李日宣 명의로 자기에게 편지가 왔다고 하므로 京城의 宗橋예배당에서 만났을 때 받았다. 그 밖에는 그 와 별로 왕래한 일이 없다.

문 : 李日宣 및 金應集은 언제부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답 : 金應集은 九월경, 李日宣은 一〇월경인데, 다 소요사건에 관계된 혐의를 받고 들어가 있다.

문 : 피고는 李日宣, 金應集 등과 京城에서 시종 회합하여 조선독립운동을 했다는 데 어떤가.

답 :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문 : 그 양인이 부탁한 가족 구제자금이란 것은 上海임시정부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답 : 나는 가족 구제자금이라고 믿고 있었다.

문 : 그것은 표면의 명의일 뿐, 그 실은 임시정부의 비용이 아닌가.

답 : 그렇지 않다.

문 : 그러나 그 돈은 가족의 구제자금으로 배당한 사례는 없지 않은가.

답 : 그것은 李日宣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다만 나는 그의 말을 믿고 돈을 준 일이 있다.

문 : 피고는 가족 구제자금으로 모집한 연월일, 장소 및 금액 출금자의 성명을 말하라.

답 : 내가 모집한 것은 금년 六월 二六일 春川面司倉里의 李東華에게서 二〇원을 받아서, 그것을 李日宣에게 준 외에, 그 전후에는 春川 및 京城, 기타에서도 모집한 일이 없다.

문 : 그 돈을 李日宣에게 준 장소 및 월일을 말하라.

답 : 금년 七月 一일 세브란스병원 운동장에서 주었다.

문 : 李日宣은 그와 같은 명목으로 각처에서 금전을 모집했는가.

답 : 그런 것은 모른다.

문 : 李東華의 집으로 피고가 가서 그 돈을 모집할 때 동행자가 있었는가.

답 : 金祚吉과 동행했다.

문 : 金祚吉과 동행한 이유는 어떤가.

답 : 李東華의 집으로 가기 전날 金祚吉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李日宣이 부탁한 금원모집에 대하여 金祚吉에게도 얼마간 내 달라고 했더니, 그는 돈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하므로 그냥 해어졌다.

다음날 또 金祚吉에게 가서 그 말을 했더니, 李東華에게 말하면 혹시 낼지도 모르니 동행하자고 해서 양인이 갔었다.

문 : 李東華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돈에 대하여 말한 상황은 어떤가.

답 : 金祚吉과 자기 양인이 올봄 아래로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학생이 소요한 결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가족이 곤경에 처하여 있으니, 다소간 구제금을 내고 싶으니 다소 기부해달라고 했다.

문 : 그 때 李東華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답 : 그것은 가엽다고 하므로 二○원을 줄터이니 적당히 선처하라고 金祚吉에게 주었다.

문 : 그 돈은 金祚吉에게서 언제 피고가 받았는가.

답 : 그 돈을 받은 날 밤에 金祚吉의 상점에서 자기가 받았다.

문 : 피고는 학생들의 가족 구제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孫秉熙 일파의 가족 구제금이 아닌가.

답 : 그것은 앞에서 학생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었다. 학생 기타 일반의 소요사건으로 입감한 사람의 차입물대 및 가족의 생활비에 충당한다는 것이었다.

문 : 李東華에게도 그런 의미로 말했는가.

답 : 그렇다. 孫秉熙나 기타 학생들 다수가 입감하여 그 가족이 곤경에 처하여 있다 고 했다.

문 : 그 돈의 모집에 대하여 金祚吉에게 말했을 때에 그는 돈이 없으니, 무엇인가 물품을 대신 낸다고 약속한 일이 없는가.

답 : 金祚吉이 그렇게 말한 일이 있다. 돈이 없으니 자전거를 줄 터이니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으나, 아직 돈으로 바꾼 일은 없다.

문 : 자전거는 받았는가.

답 : 자전거는 아직 안받았다. 그 뒤 그것에 대해서는 나도 말하지 않았고, 또 상대방도 말한 일이 없다.

문 : 金祚吉에게 그 돈 모집에 대하여 李東華 외에도 기회를 보아 말해 달라고 부탁한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金祚吉에게 돈을 내라고 했을 때 그 돈은 가족의 구제금이 아니고 上海임시정부 자금이라는 것을 은밀히 말한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피고는 上海의 임시정부에 있는 사람과 통신을 교환한 일이 있는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피고는 그들과 통신을 하는데, 암호, 즉 상업상에 대하여 통신하는 것처럼 뜻의 글자를 사용하여 통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것은 모른다.

문 : 그러나 피고는 그 암호로 池達源에게 통신한 것이 아닌가.

답 : 池達源은 나에게 京城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 주었었다.

문 : 언제 그렇게 말했는가.

답 : 금년 七月경에 편지로 부탁해 왔었다.

문 : 그러면 池達源은 그 암호에 대하여 이전부터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인가.

답 : 池達源이 통신할 때에는 상업상의 의미와 같이 써서 통신해 달라고 했으므로 암호를 사용했었다.

문 : 암호는 서로 사전에 협의가 없으면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池達源과 피고 사이에는 전부터 그 암호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

답 : 그렇게 쓰면 대개 池達源 쪽에서 상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뿐으로, 별도로 협의는 없었다.

문 : 그러면 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서면으로 약속했다고 진술했는가.

답 : 그것은 池達源이 편지로 부탁했다는 것을 진술했을 뿐이다.

문 : 그러나 경찰에게 발견될 염려가 있으니 그런 수단을 취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어떤가.

답 : 그것은 사실대로 기재하면 발견될 염려가 있으므로 그런 문자를 사용했고, 별로 깊은 의미는 없다.

문 : 池達源에게 보낸 편지는 이것인가.

이 때 영제一七七호의 一七을 보이다.

답 : 그렇다.

문 : 그 편지 속에 「海商會」라는 것은 上海의 임시정부인가.

답 : 그렇다.

문 : 「各繼續하여 分業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 :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각처에 산재하여 동지들은 모두 그 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문 : 李世君을 상회에 참열시키려고 했으나, 사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어떤가.

답 : 그것은 「李왕세자 전하가 上海로 가려고 했으나, 사고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문 : 그리고 「公事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분주중」이라는 취지의 뜻은 어떤가.

답 : 「공의 일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한 것은 신문 기타로 조선독립운동에 대해서 발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또 「내가 분주중」이라고 쓴 것은 자기는 고학생이므로 방과후는 서양인의 집에 도 가야하니 몸이 바쁘다는 의미이다.

문 : 피고는 학자금에 대해서 春川의 서양인이 보내주고 있으니 학자금을 얻는 것은 그리 고통은 없다고 생각된다.

또 「분주중」이라는 의미는 여기 저기에서 진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공부 때문에 바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그것은 독립운동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진력하고 있으니 그 때문에 몸이 여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닌가.

답 : 이곳 서양인에게 받는 급료는 한달에 一六원이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므로 매일 아침 六시에 일어나서 연희학교의 교사 「온돌」이라는 서양인의 집으로 조선어를 가르치러 가서 一시간에 一〇전씩의 비율로 매월 평균 약 一〇원쯤이다. 그것을 합해서 학비로 하고 있다.

문 : 그러면 방과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답 : 「온돌」의 집에는 아침과 저녁에 가기 때문에 달리 운동할 틈이 없다.

문 : 학교의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답 : 월사금 및 책값을 합해서 한 해에 一〇〇원, 그리고 숙박료가 一八·九원이 매월 드니, 그밖에는 나의 용돈이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위를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다.

같은 날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洪鍾肅 신문조서

피고인 洪鍾肅

위 피고인에 대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八년 一二
월 一八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열석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 연령은 洪鍾肅 四三세

신분, 직업은 예수교회 기자

주소는 春川郡春川面佳淵里一二八

본적지는 위와 같다.

출생지는 開城郡西面江里

문 : 위기, 훈장, 종군기장, 연금, 은급 또는 공직에 있지 않은가.

답 : 아니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피고는 예수교 신자인가.

답 : 一四년 전부터 남감리파를 믿고 있다.

문 : 피고는 목사인가.

답 : 원래 목사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만두고 기자를 하고 있다.

문 : 金祚吉과는 친한가.

답 : 그렇다.

문 : 금년 一一월 三〇일 저녁 때에 金祚吉에게서 조선독립에 대한 선언서 四장 —

조를 받았는가.

답 : 그렇다.

문 : 金祚吉의 집 어디에서 받았는가.

답 : ——월 三〇일 밤에 식산은행 앞에서 金祚吉에게서 받았다.

문 : 金祚吉의 집에서 받은 것이 아닌가.

답 : 교회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金祚吉의 집 점포에 들러서 놀았는데, 그 때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대로 돌아오는 길에 金祚吉도 외출하여 받았다.

문 : 무엇이라고 하면서 주었는가.

답 : 다만 가져가 보라고 하면서 주었다.

문 : 그것을 누군가 딴 사람에게 보이거나, 또는 그 취지를 전하라고 한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던가.

답 : 그런 말은 없었다.

문 : 그 받은 것은 이것인가.

이 때 영제一七七호의 — 내지 四를 보이다.

답 : 그렇다.

문 : 어디서 보냈다고 했는가.

답 : 아무 말이 없었으므로 모른다.

문 :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답 : 나로서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문 : 그 선언서는 어떻게 했는가.

답 : 다음날 아침에 온돌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렸다.

문 :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가.

답 : 별로 아무 것도 못느꼈다.

문 : 피고는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가.

답 : 조선인이므로 바라고는 있다.

문 :京城 방면 등과 연락을 취하고 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일은 결코 없다.

문 : 항상 상업문과 같은 것을 써서 문서의 왕복을 한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宋長根을 아는가.

답 : 알고 있다.

문 : 宋春根과 문서의 왕복을 한 것이 아닌가.

답 : 宋春根을 알고는 있지만, 문서의 왕복은 없었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위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다.

같은 날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松平和夫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대정 八년 一二월 一四일

京畿道 開城경찰서장

江原道 春川경찰서장 귀하

金祚吉 신문조서(제二회)

피고인 金祚吉

위 피고인에 대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八년 一二월 二二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張錫祚

열석하여 검사는 전회에 이어 전기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金祚吉인가.

답 : 그렇다.

문 : 一一월 二九일에 피고의 집으로 온 굴상자는 이것인가.

이 때 五호증을 보이다.

답 : 그렇다.

문 : 위 굴상자는 누가 보낸 것인가.

답 : 상자 표면에 宋東秀라고 되어 있으니 그가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

문 : 그러나 宋東秀라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답 : 그것은 모른다.

문 : 宋東秀라는 사람을 아는가.

답 : 모른다.

문 : 모르는 사람에게서 그런 것을 받아서 왜 배포했는가.

답 : 폐보니 딴 사람에게 배포하라는 서면이 있었으므로 배포했다.

문 : 배포하라는 서면이 있었다고 해서 불온문서를 딴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은 피고
도 그 불온문서의 취지에 동의한 셈인가.

답 : 그렇지는 않다. 만약 배포하지 않으면 뒷날 내 몸에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
기 때문에 배포했다.

문 : 재난이란 무엇인가.

답 : 별로 깊이 생각한 적은 없다.

문 : 위 문서는 宋春根이 보낸 것이 아닌가.

답 : 그것은 모른다.

문 : 필적 등으로 보아 宋春根이 보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

답 : 그가 보냈다고 할 수는 없다.

문 :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피고에게 보내서 과연 피고가 딴 사람에게 배포할지 어
떨지 모르면서 보낼리가 없으니 피고는 이전부터 상의하고 보낸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냈었다.

문 : 불온문서는 얼마나 되는가.

답 : 많았는데 세어보지 않았으므로 모른다.

문 : 상자 표면에 五〇〇이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五〇〇조가 아닌가.

답 : 모른다.

문 : 그 불온문서는 어떻게 처분했는가.

답 : 받은 날에 金敏秀에게 一조, 嚴中煥에게 一조, 李東華에게 七조, 池達源에게
一조, 金光鎬에게 一조, 그 다음날 三〇일에 洪鍾肅에게 一조, 一二 월 一일
아침에 金光鎬에게 부탁하여 加平의 李起永에게 一조를 보내고 나머지는 자택
에 숨겨 놓았었다.

문 : 피고가 순사의 동행요구로 春川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向井사진관 부근에서 四
조쯤 버렸다고 했는데 어떤가.

답 : 四조는 아니다. 가지고 있던 一조를 버렸었다.

문 : 피고는 春川경찰서에서 四조를 버렸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

답 : 四조라고 하지 않았다. 四장 一조라고 했었다.

문 : 宋東秀가 보낸 문서 五〇〇조의 처분방법은 어떤가.

답 :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배포한 것 一三조와 그밖에 七조를 만들었었다.

문 : 二〇조를 만든 것은 다수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답 : 그렇다. 그것만 배포할 생각이었다.

문 :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배부할 예정이었는가.

답 : 그것은 정하지 않았었다.

문 : 그 보내온 문서를 피고가 딴 사람에게 배포했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이었는가.

답 : 별로 목적은 없다. 배포해 달라는 서면이 있었기 때문에 배포했다.

문 : 모르는 사람이 불온문서를 보냈는데, 왜 경찰관현에 신고하지 않았는가.

답 : 배포해 달라는 서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현에 신고한다면 뒷날 곤란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문 :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보냈으므로 지장이 없지 않은가.

답 :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배포한 것은 잘못되었다.

문 : 피고는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가.

답 : 조선인이므로 독립을 바란다.

문 : 그러나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다. 어떤가.

답 : 희망은 했지만 운동은 안했다.

문 : 독립운동에 관한 불온문서를 딴 사람에게 배포한 것은 곧 운동이 아닌가.

답 : 그래도 나는 운동할 생각으로 배포한 것은 아니다.

문 : 그러나 피고는 언제나 조선의 독립에 대하여 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결코 그런 일은 없다.

문 : 그러면 피고가 위 문서를 배포한 취지는 무엇인가.

답 : 별 까닭은 없다.

문 : 특히 加平에는 발각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인편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답 : 지금 생각하면 잘못되었지만, 그 때에는 별로 깊은 생각은 없었다.

문 : 池達源에게 배부했을 때의 상황 및 장소를 말하라.

답 : 그가 내 점포에 왔을 때에 이것을 본 뒤에 없애라고 하면서 주었다.

문 : 池에게 본 뒤에 딴 사람에게 배부하든지, 또는 그 취지를 전해 달라고 하면서 주지 않았는가.

답 : 그런 말은 안했다.

문 : 金敏秀에게 줄 때의 상황 및 장소를 말하라.

답 : 내가 그의 집으로 가서 역시 본 뒤에 없애라고 하면서 주었다.

문 : 본 뒤에 딴 사람에게 배부하든지, 또는 그 취지를 전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답 : 말하지 않았다.

문 : 金光鎬에게 줄 때는 어떤가.

답 : 그 사람이 나의 상점에 왔을 때, 전과 같이 보고는 없애라고 하면서 건네주었다.

문 : 본 후에 남에게 배부하거나 그 취지를 전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답 : 말하지 않았다.

문 : 嚴中煥에게 줄 때의 상황 및 장소를 말하라.

답 : 내가 그의 집으로 가서 앞에서와 같이 보고는 없애라고 하면서 주었다.

문 : 본 뒤에 딴 사람에게 배부하든가, 또 그 취지를 전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답 : 말하지 않았다.

문 : 洪鍾肅에게 줄 때는 어떤가.

답 : 식산은행 앞에서 앞에서와 같이 본 뒤에는 없애라고 하면서 주었다.

문 : 洪에게도 본 뒤에 딴 사람에게 배부하든가, 또는 그 취지를 전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답 : 말하지 않았다.

문 : 李起永에게 줄 때의 상황은 어떤가.

답 : 金光鎬가 加平으로 갈 때에 보통의 편지에 一조를 넣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썼다.

문 : 편지에 아무 것도 안썼다면 李起永쪽에서는 모를 것이 아닌가.

답 : 그렇다. 선언서를 보내니 본 뒤에 金在榮에게 보이고, 태워버리라고 편지끝에 써 넣었었다.

문 : 金在榮은 어디의 사람인가.

답 : 加平郡의 사람이다.

문 : 보통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특별히 인편으로 보낸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답 : 특별히 인편으로 보낸 것은 아니다. 마침 金光鎬가 加平으로 가므로 부탁했었다.

문 : 그렇지 않고 타인이 알 염려가 있기 때문에 金에게 부탁한 것이 아닌가.

답 : 그렇지 않다.

문 : 그러나 피고는 春川경찰서에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는가.

답 :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문 : 李東華에게는 어디에서 주었는가.

답 : 내가 그의 집으로 가서 사랑방에서 주었다.

문 : 그것은 처음의 一조분인가.

답 : 그렇다.

문 : 뒤의 六조는 어디서 주었는가.

답 : 같은 때에 처음 一조를 주고, 돌아올 때에 또 六조를 주었다.

문 : 그 六조는 李의 요구로 준 셈인가.

답 : 그런 것은 아니다. 마침 七조가 있었는데, 나도 다른데에 배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배포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주었었다. 그런데 李東華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배부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다.

문 : 그러나 李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가 배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았다는 어떤가.

답 : 그렇다. 지금의 진술은 조금 잘못되었다. 다른 테에 보일 곳이 있으면 보이라고 하면서 주었다.

문 : 그러면 李東華도 그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배부한다고 승낙하고 받은 셈인가.

답 : 내가 주었을 때에 그는 짚은 표정을 짓고 있었으므로 승낙하고 받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문 : 수통을 주었고, 李는 받았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부하든지, 또는 보인다 든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

답 : 그럴 것이다.

문 : 그리고 그 밖에 一一월 三〇일에 피고가 예수교회로 四조를 가지고 갔었다는 데 어떤가.

답 : 四조는 아니다. 一조이다. 그것은 洪鍾肅에게 줄 생각으로 가지고 갔었는데, 사람이 많이 있었으므로 줄 수가 없어서 돌아오는 도중 은행 앞에서 주었었다.

문 : 경찰서에서는 이는 사람에게 줄 생각으로 四조를 가져갔었다고 진술하지 않았

는가.

답 : 그렇지 않다. 만약 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일 것이다.

문 : 宋東秀의 명의로 보내온 것은 이것인가.

이 때 一, 二, 三, 四호 및 八호증을 보이다.

답 : 그렇다.

문 : 八호증의 서면에 의하면, 만일 타일에 체포되었을 경우에 그 답변에 대하여 서로 주의운운이라고 기재된 것은 어떤가.

답 : 그 의미는 모른다.

문 :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편지에 그런 것을 쓴 까닭이 없으므로 보낸 사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가.

답 : 그래도 모른다.

대정 八년 一二월 二二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겸 서기 張錫祚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예심청구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金祚吉

李東華

宋春根

위 사람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빙서류 목록과 같이 보내는 바 예심처분이 있기를 바람.

대정 八년 一二월 二七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분국

조선총독부 검사 北條久清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예심계 귀중

피고 金祚吉은

피고 宋春根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서로 왕복하고 있는 터에 宋春根은 현재 서대문

감옥에 재감중인 李日宣, 金應洙 등과 함께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기백을 통하고, 宋春根과 함께 모의하여 上海의 조선임시정부 자금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에 宋春根의 내방으로, 우선 스스로 현금 대신에 자전거一副를 줄 것을 약속했음.

그리고 그날 피고 李東華의 집으로 가서 宋春根과 함께 천도교주 孫秉熙 이하 三二명의 가족을 구휼한다는 명목으로, 실은 上海임시정부 운동자금으로 출금을 구하여, 그날 그 곳에서 그에게서 돈 二〇원을 영수하고, 宋春根은 일단 京城으로 돌아왔음.

대정 八년 七月 一일 京城의 세브란스병원 운동장에서 은밀히 李日宣에게 그 돈을 주었음.

또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에 발송인 宋東秀 명의로 피고 宋春根이 불온한 기사가 있는 조선독립 선언서 및 부속문서 四장一조의 것 五〇〇조를 굴상자에 넣어 소포 우편으로 보낸 것을 받았음.

그날 그 중의 七조를 피고 李東華의 청구로 그의 집에서, 一조는 金敏秀에게 피고의 집에서, 一조는 嚴中煥에게 그의 집에서, 一조는 池達源에게, 一조는 金光鎬에게, 그 다음날 三〇일에 一조는 洪鍾肅에게 모두 피고의 집에서 그것을 주었음.

그 다음날 一二월 一일에 李起永에게 보내라고 봉서로 하여 金光鎬에게 의탁했음.

피고 李東華는

전항과 같이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에 金祚吉, 宋春根 양인의 내방을 받고, 동인 등이 표면상 孫秉熙 이하 三二명의 가족 구휼금 명의로, 실은 上海의 임시정부 운동자금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출금을 요구하니, 그것을 승낙하고, 당일 돈 二〇원을 양인에게 주었음.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에 金祚吉이 전항의 불온기사가 있는 문서를 은밀히 피고의 집으로 가져가서, 일독 후에 타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또 그 문서 六조의 교부를 요구하여, 그것을 수령 선전했음.

피고 宋春根은

현재 서대문감옥에 재감중인 李日宣 및 金應洙 등과 함께 이전부터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분주중에 피고 金祚吉과 친교를 맺고 왕복했음.

대정 八년 六월 二九일에 金祚吉의 집으로 방문하여 동인과 함께 上海임시정부 운동자금모집에 대하여 숙의하고, 金祚吉은 자전거一副를 공여할 승낙을 받았음.

그날 동인과 동반하여 李東華를 방문하고, 표면상 孫秉熙 이하 三二명의 가족 구휼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은 上海의 임시정부 운동자금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출금을 구하여, 당일 돈 二〇원의 교부를 받았음.

동년 七月 一일 京城의 세브란스병원 운동장에서 그것을 李日宣에게 교부했음.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에 宋東周 명의로 불온한 기사가 있는 조선독립선언서 및 부속문서 四장 一조의 것 五〇〇조를 굴상자에 넣어 소포우편으로 金祚吉에게 보내어 타인에게 배포하도록 부탁했음.

이상 각 피고는 모두 다중 공동으로 안녕질서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동한 자임.

金祚吉 신문조서

피고인 金祚吉

위 피고인에 대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九년 二월 二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淩見竹太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열석하여 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족칭,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은 金祚吉

연령은 四〇세

족칭은 —

직업은 자전거업

주소는 春川郡春川面佳淵里九六번지

본적은 위와 같다.

출생지는 위와 같다.

문 : 작위, 훈장, 기장을 가지고, 연금, 은급을 받고, 또는 공무원의 직에 있지 않은가.

답 : 아니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대정 七년 六월 二七일에 수렵단속규칙 위반죄로 春川지청에서 벌금 一〇원을 낸 일이 있다.

문 : 피고의 교육정도는 어떤가.

답 : —〇세경부터 —七·八세경까지 한문을 배웠을 뿐이다.

문 : 종교는 어떤가.

답 : 나는 지금부터 —〇년쯤 전부터 기독교를 믿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남감리파에 속한 교회의 신도이다.

문 : 기독교회는 몇파로 나뉘어져 있는가.

답 : 그렇다. 남북 양파로 되어 있다.

문 : 피고는 같은 피고 宋春根과는 친한 사이인가.

답 : 그렇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남감리파에 속한 기독교 신자이므로 그 관계로 알고 지낸다.

문 : 그런데 피고에게는 이런 범행이 있다는데 어떤가.

이 때 피고에 관한 공소사실을 알려주다.

답 : 결코 그런 일은 없다. 그 시말은 이러하다. 宋春根은 원래 이곳 春川에 살고 있은 적이 있고, 또 기독교 신자이므로 전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대정 八년 六월 하순경에 (날짜미상) 그는 돌연 春川으로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현재 범죄 사건으로 입감중인 천도교주 孫秉熙 이하 三二명의 가족에 대한 규출자금을 모집하러 왔는데, 우리들도 동정이 있으면 얼마간 각출해 달라고 했다. 나는 당시에 소지한 돈이 없었으므로 적당히 사절했더니, 그는 돈이 없으면 점포에 있는 자전거一大를 기부하라고 했으나, 나는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확답은 하지 않았더니, 그는 그러면 자기는 李東華의 집으로 상의하러 갈 터이니 너도 함께 와 달라고 했으므로, 나는 하는 수 없이 동행했다.

宋春根은 李東華에게도 나에게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상의를 했다. 李東華는 그것에 동정하여 돈 二〇원을 출금하고, 宋春根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京城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문 : 피고는 孫秉熙 이하 三二명의 입감자 가족에게 동정했는가.

답 : 그렇다. 위 孫秉熙 이하 三二명 중에는 나와 같은 파의 기독교 신자로 전부터 아는 사이인, 京城에 사는 申錫九, 吳華英, 그리고 元山에 사는 鄭春洙의 三명이 있으므로 이점 등에 대해서는 매우 동정하고 있다.

문 : 그러면 왜 자전거一大쯤을 기부하지 않았는가.

답 : 그것은 생각해 보자고 말한 그대로였다.

문 : 그렇지 않고, 宋春根은 현재 서대문 감옥에 재감중인 李日宣, 金應洙 등과 함께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기맥을 통하고 있으면서, 上海 조선임시정부의 자금조달차 온 것이 아니었는가.

답 : 그런 일은 나로서는 모른다. 전술한 바와 같이 宋春根은 孫秉熙 이하 三二명의 입감자 가족의 구휼금을 모집하러 왔다고 한 것에 틀림없었지만, 그러나 나로서는 宋春根의 속마음은 모른다.

문 : 그런데 동년 一一월 二九일에 宋春根이 불온한 기사가 있는 조선독립선언서 등을 밀송해 온 것이 아닌가.

답 : 이름도 모르는 宋東秀의 명의로 물은 바와 같은 일시에 굴상자에 넣은 소포우편물이 우리 집으로 도착한 것은 틀림없는데, 과연 宋春根이 발송한 것인지 어떤지는 나로서는 전혀 모른다. 또 어떤 까닭으로 그런 것을 보냈는지 그런 것도 다 모른다.

문 : 위 소포의 발송인 주소는 어떻게 쓰여 있었는가.

답 :京城蓬萊町 청공장 내 宋東秀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전혀 모른다.

문 : 굴상자에는 어떤 문서가 들어 있었는가.

답 : 조선독립선언서라는 제목의 문서 및 부속문서 四장 一조의 것 五〇〇조 외에 그 선언서를 배포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이 들어 있었다.

문 : 그 선언서는 어떻게 했는가.

답 : 배포해 달라는 문서가 있었으므로 만약 그냥 둔다면 뒷날 어폐한 위해를 입을 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이 당일내로 七조를 李東華의 집으로 가져가서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春川의 金敏秀, 嚴中煥, 池達源, 金光鎬에게 각각 一조를, 다음 三〇일에 洪鍾肅에게 一조를 배부했다.

문 : 京畿道 加平의 李起永에게도 배부한 것이 아닌가.

답 : 그렇다. 동년 一二월 一일에 一조를 서면과 동봉하여 金光鎬에게 부탁하여 보냈다.

문 : 피고는 李東華 외 六명에 대하여 선언서를 배포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 두었는가.

답 : 모두 보고 나서는 태워버리라고 하면서 주었었다.

문 : 왜 그렇게 밀했는가.

답 : 불온문서이므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태워버리라고 주의한 것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

문 : 피고는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가.

답 : 조선인이므로 독립은 바라고 있다.

문 : 그 희망의 이유는 어떤가.

답 : 독립을 바라느냐는 물음이므로 그렇다고 대답했으나, 조선이 독립하여 어떻게 되는 것과 같은 정치상의 일은 나로서는 모르므로 별 이유는 없다.

문 : 이것을 본 기억이 있는가.

이 때 제八호증을 보이다.

답 : 이것이 선언서와 동봉한 편지인데, 배포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이다.

문 : 소포 및 지금 보인 제八호증 서면의 글자는 피고 宋春根의 필적이 아닌가.

답 : 나는 宋春根의 필적을 잘 모르므로 누구의 필적인지 그것은 전혀 모른다.

문 : 제八호증 서면의 끝에 「불행히 체포된다면 연락에 관한 주의서대로 답변하라」
고 기재한 것 같은데, 어떤가.

답 : 나에게는 그 의미는 모른다.

문 : 그러면 「연락에 관한 주의서」라도 동봉해 있었는가.

답 : 알아차리지 못했다.

문 : 알아차리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답 : 그래도 나는 그 서면을 본 일이 없다.

문 : 이것은 본 기억이 있는가.

이 때 제九호증을 보이다.

답 : 본 기억이 없다.

문 : 그러나 이 제九호증은 피고의 집에서 발견한 것인데 어떤가.

답 : 나는 모른다.

문 : 이 서면을 알겠는가.

이 때 제一〇호증을 보이다.

답 : 그것은 宋春根이 나에게 보낸 서면이다.

문 : 그 서면에 의해서도 피고는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전에 상세한 상의를 하고 기맥을 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가.

답 : 宋春根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서면을 나에게 보냈는지 그의 마음을 나로서는 모르겠으나, 나는 독립운동에 대하여 宋春根과 상의한 일은 전혀 없다.

문 : 그리고 그 서면에는 신문을 보낸다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

답 : 그렇다. 국민신문이 동봉되어 있었는데, 조선독립에 관한 불온한 기사가 실려 있었으므로, 이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곧 태워버렸다.

문 : 그리고 등사판을 보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가.

답 : 작년 六월 하순경에 宋春根이 이곳 春川에 왔을 때에 현 등사판 一대가 고물점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서 보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쓴 것으로 생각되나, 나는 귀찮아서 보내지 않았다.

문 : 제一〇호증 서면에 의해서도 피고는 宋春根과 독립운동에 관하여 전부터 상의를 하여 기맥을 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어떤가.

답 : 실은 宋春根이 작년 六월 하순경에 이곳에 왔을 때에, 나에게 독립운동에 관하여 이야기했지만, 나는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므로 그것에 호응하지 않았다. 宋春根쪽에서는 내가 독립운동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런 서면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와 전부터 상의하여 기맥을 통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문 : 이것이 굴상자에 들어 있던 선언서인가.

이 때 제一호 내지 제五호증을 보이다.

답 : 그것이 틀림없다.

문 : 이것은 어떻게 했는가.

이 때 제七호 伊藤공의 그림을 보이다.

답 : 그것은 고물점에 있는 것을 내가 산 것인데, 본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것을 산 까닭은 다만 그림을 그린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별로 이유는 없다.

문 : 이들 서류는 어떻게 했는가.

이 때 제一〇호(학도의 창가), 제一二호(포켓 대정일기) 및 제一八호 내지 二〇호 증을 보이다.

답 : 그들 서류는 우리 집에서 압수된 것이지만, 본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뿐이다.
이 신문은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가 통역하고, 위 녹취한 것을 그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하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대정 九年 二월 二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宋春根 신문조서

피고인 宋春根

위 피고인에 대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九年 二월
—二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열석하여 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족칭,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은 宋春根

연령은 二九세

족칭은 —

직업은 의학생

주소는 京城府櫻井町二丁目一五五번지

본적은 楊州郡廣積面大地里四一五번지

출생지는 본적지와 같다.

문 : 작위, 훈장, 기장을 가지고 연금, 은급을 받고, 또는 공무원의 직에 있지 않은가.

답 : 아니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피고의 교육정도는 어떤가.

답 : 나는 一五세 때에 京城 蓮洞의 徽新학교에 입학하여 三년째에 다시 청년학관으로 옮겨 보통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대정 二년 春川으로 와서 미국선교사 「오크바」의 조선어 교사를 하다가, 대정 五年 九월중에 京城 延禧전문학교에 입학하여 一년쯤 배우다가, 대정 六년 四월중에 세브란스병원 부속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문 : 종교는 어떤가.

답 : 나는 남감리파에 속하는 교회의 기독교 신자이다.

문 : 피고는 같은 피고 金祚吉과는 친한가.

답 : 그렇다. 나는 대정 二년경부터 대정 五년경까지 春川에 거주하면서 미국선교사 「오크바」의 조선어 교사를 한 관계도 있고, 또 金祚吉과는 같은 파에 속한 기독교 신자 동지이므로 친하게 지내고 있다.

문 : 피고는 현재 서대문감옥에 재감중인 李日宣 및 金應洙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답 : 별로 깊은 관계는 없으나, 같은 파에 속하는 기독교 신자 동지이므로 자연 알게 되었다.

문 : 그들은 어떤 사건으로 입감해 있는가.

답 : 모두 소요사건의 혐의를 받고, 金應洙는 작년 九월중에 李日宣은 동一〇월중에 구인되었다.

문 : 피고는 李日宣, 金應洙 등과 기택을 통하여 조선독립운동에 관계하고 上海 조선임시정부 자금조달 등에 대하여 활동한 것이 아닌가.

답 : 결코 그런 일은 없다.

문 : 그러나 피고는 上海 조선임시정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작년 六월 二六일경에 春川에 와서 李東華 등을 설유하여 출금했던 것이 아닌가.

답 : 그렇지 않다. 李東華로 하여금 돈 二〇원을 물은 그날에 출금하여 받은 것은 틀림없으나, 그 시말은 이렇다.

나는 春川 미국선교사 겸 의사 「힐」에게 학자금에 대하여 상의할 것이 있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에 春川에 왔는데, 그 조금 전에 세브란스병원인지, 어디서인지, 지금 그 장소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나, 李日宣과 만나서 그에게 나는 근일중에 春川으로 여행한다고 했더니, 그는 그것은 매우 잘되었다. 실은 알다싶이 현재 소요사건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입감되어

있으니, 그들에 대한 구제자금을 모집하고 싶은데, 만약 그대가 春川으로 가거든 아는 사람에게 위 구제금을 모집해 오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동년 六월 二六일 春川에 와서, 우선 金祚吉을 방문하여 李日宣이 부탁하는 취지를 말했더니, 그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므로 나는 그날 저녁 때 다시 그의 집으로 갔더니, 그는 현재 소지금이 없으니 점포에 있는 자전거一副를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金祚吉은 李東華에게 상의해 보자고 하므로, 나는 그와 동반하여 李東華의 집으로 갔다.

그에게 金祚吉에게 말한 바와 같이 상의했더니, 그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곧 출금해 줄 것 같지도 않았으므로 잘 부탁한다 하고 그의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날 二七일에 나는 金祚吉의 집으로 가서 일단 李東華에게 상의해 달라고 했더니, 그는 바로 혼자서 李東華의 집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돈 二○원을 李東華가 주었다고 하면서 주었으므로 받았던 것이다.

문 :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답 : 나는 동년 七月 一일경에 京城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이라고 생각한다. 세브란스병원 운동장에서 李日宣을 만나서, 나는 春川에서 二○원만 모집해 왔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그에게 주었다.

문 : 李東華가 내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답 : 아니다. 말하지 않았다. 다만 春川에서 二○원을 모집했다고 하면서 주었다.

문 : 金祚吉에게서 자전거를 받았는가.

답 : 아니다. 金祚吉은 자전거一副를 기부한다고 했으나, 말만 하고 그대로 京城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문 : 그 일은 李日宣에게 밝혔는가.

답 : 아니다. 金祚吉이 자전거를 기부한다고 한 말을 李日宣에게는 아무 말도 안했다.

문 : 이 서면을 기억하는가.

이 때 제一〇호, 피고가 金祚吉에게로 보낸 서면을 보이다.

답 : 그렇다. 그것은 내가 金祚吉에게 보낸 편지가 틀림없다.

문 : 이 서면의 취지를 말하라.

답 : 이 서면의 취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돈 二○원을 李日宣에게 줄 때에 金祚吉이

자전거 一대를 기부한다고 했더니, 그는 그러면 자전거를 기부하도록 편지를 내라고 했으므로 그 뜻을 적어 보냈다. 별로 깊은 이유는 없다.

문 : 그 전후의 문면의 내용을 상세히 말하라.

이 때 피고는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았음.

문 : 말이 없으면 알수 없지 않은가.

답 : 그래도 조선독립운동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서면이다.

문 : 그러면 묻겠는데, 동호증 중에 「그동안 장애가 있어서 하고 있던 일을 말한 것 인데, 근일 또 계속하고 있다. 운운」. 그리고 「근일중 한 사람이 직접 저쪽 길이 열려서 왕래하게 되었으니 저쪽의 통신을 민첩하게 하고 있다. 운운」의 기사의 의미를 말하라.

답 : 미안하다.

문 : 미안하다고 해서는 모르지 않는가. 요는 그 의미는 피고들이 李日宣, 金祚吉 등과 조선독립운동에 관하여 기택을 통해 있고, 또 上海 조선임시정부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

답 : 결코 그렇지는 않다.

문 : 그러나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답 : 그래도 조선독립운동에는 관계가 없다.

문 : 동호증 중 「지금 특별히 청구할 것은 전일 말한대로 자전거 一대를 기부해 주면 우리가 일하는데 매우 긴요히 필요하다. 운운」의 기사로 보더라도 피고가 金祚吉 등과 기택을 통하여 上海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여 그 자금조달의 운동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틀림이 없지 않은가. 어떤가.

답 : 결코 그런 일은 없다.

문 : 그리고 동호증 중에 「지금 급한 것은 저쪽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급하다. 가능 하면 주선하여 보내주기 바란다. 운운」의 기사로 보아서도 上海임시정부의 자금을 조달하도록 金祚吉에게 부탁했고, 그리고 그 급한 것을 보낸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래도 피고는 모른다고 하는가.

답 : 매우 미안하다. 이 서면(제一〇호증)의 취지는 앞에서 밝혀준 바와 같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서면의 취지는 전부 李日宣의 뜻을 받아서 쓴 것으로 결코 내 본의 로 쓴 것은 아니다.

문 : 그러면 동호증 중에 「우리들 중의 한 사람이 직접 저쪽의 길이 열려서 왕래하게 되니운운」 한 것은 上海의 임시정부로 가서 그 곳과 통신을 민첩하게 한다. 그 것에 대해서는 자전거가 필요하니 그것을 기부해 달라는 의미인가.

답 : 그렇다. 그대로 틀림없다.

문 : 그러면 피고는 春川에 갔을 때에 金祚吉에게는 조선독립운동상에 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

답 : 그렇지는 않다. 별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金祚吉쪽에서 는 내가 春川에 간 것은 그 운동 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돈 二〇원을 李東華에게 출금하도록 한 것도 上海임시정부의 자금이란 것은 金祚吉은 알고 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입감자의 구제자금이라고 말한 것에 틀림없다.

문 : 李東華도 上海임시정부의 자금이란 것은 알고 출금한 것이 아닌가.

답 : 그의 일은 나로서는 잘 모르나, 李東華의 집에 갔을 때에는 전술과 같이 입감자 구제자금이라고 한 것에 틀림없다.

문 : 피고가 春川에 갔을 때 金祚吉과 조선독립운동상에 관하여 상세한 밀의를 하고, 上海 임시정부 자금조달을 부탁한 것이 아닌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어떤가.

답 : 결코 나는 그 때에 金祚吉과 독립운동상에 관하여 이야기한 일은 없는데, 전술한 바와같이 金祚吉은 내가 春川에 가면, 틀림없이 上海임시정부의 자금조달 때문에 春川에 온 것이라고 자기 혼자서 이십전심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문 : 그리고 제一〇호증 서면과 함께 신문도 동봉하여 李東華 등에게 보이려고 했는가.

답 : 그렇다.

문 : 그 신문에는 어떤 기사가 실려 있었는가.

답 : 조선독립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문 : 등사판도 보내 달라고 했는가.

답 : 그렇다. 내가 春川에 갔을 때에 고물상에서 현 등사판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京城으로 돌아와서 돈 二〇원을 줄 때에 李日宣에게 그 일을 말했더니, 그는

그것도 金祚吉에게 사 보내라고 했으므로 그렇게 써 보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李日宣이 알고, 나로서는 모른다.

문 : 모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답 : 그래도 나로서는 모른다.

문 : 피고는 대정 八년 ——월중에 京城蓬萊町 철공장 내 宋東秀의 명의로 조선독립선언 서류를 굴상자에 넣어서 소포우편으로 金祚吉 앞으로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런가.

답 : 그런 기억은 결코 없다.

여기에서 예심판사는 별지와 같이 증인에게 직접 쓰게 했는데, 부록으로 이 조서 끝에 첨부하다.

문 : 굴상자에 적혀 있는 글자와 피고의 필적은 매우 흡사한데 어떤가.

답 : 모른다.

문 : 이것을 본 기억이 있는가.

이 때 제一八호증을 보이다.

답 : 이 서면은 李日宣이 上海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대정 八년 七月중에 나에게 문안편지를 보낸 서면의 봉투인데, 조선독립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 이것은 어떤가.

이 때 제一九호증을 보이다.

답 : 이것은 春川의 池達源이 보낸 엽서인데, 이 서면의 내용은 京城의 물가를 물은 것으로 본건과는 관계가 없다.

문 : 이것은 어떤가.

이 때 제一七호증을 보이다.

답 : 이것은 내가 春川의 池達源에게 보낸 서면이다.

문 : 그 서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답 : 이 편지는 조선독립운동에 관해서 통보한 것이 틀림없다. 그 취지는 「근일의 상황은 전과 같다. 그런데 海商會는 각각 계속해서 分業中이다」라는 의미는 「京城은 별로 변함이 없다. 上海의 임시정부는 해산했지만, 그 운동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李世君은 상회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사고에 의하여 부득이 참석

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李왕세자 전하는 上海로 가려고 했으나, 사고 때문에 가지 못했다. 「公之事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는 의미는 조선독립에 대해서는 신문 기타에 이미 발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위는 실제의 상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문 : 그러면 李왕세자 전하는 上海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가.

답 : 실제의 일은 모르나, 학생 동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문 : 피고도 동지와 공모하여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제一七호증에서 판명되는 것이 아닌가.

답 : 그렇게 인정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별로 나는 조선독립운동에 관계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 신문은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가 통역했는데 위 녹취한 것을 그 통역 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하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대정 九년 二월 一二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李東華 신문조서

피고인 李東華

위 사람에 대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九년 二월 一二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열석하여 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족칭, 직업, 주소, 본적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은 李東華

연령은 四〇세

족칭은 —

직업은 농업

주소는 春川郡春川面司倉里二八번지

본적은 위와 같다.

출생지는 위와 같다.

문 : 작위, 훈장, 기장을 가지고 연금, 은급을 받거나, 또는 공무원의 직에 있지 않은가.

답 : 아니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피고는 같은 피고 金祚吉, 동 宋春根과는 친숙한 사이인가.

답 : 모두 면식이 있으나, 친숙하지는 않다.

문 : 피고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가.

답 : 아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문 : 그런데 피고는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경에 上海임시정부에 운동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돈 二〇원을 피고 宋春根 등에게 주었다는데 어떤가.

답 : 묻는 그 무렵에 돈 二〇원을 宋春根 등에게 준 것은 틀림없으나, 上海임시정부 운동자금으로 준 것이 아니다. 그 전말은 이러하다.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경에 宋春根 및 金祚吉 양인이 우리 집에 와서 말하기를 현재 소요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가족 구제자금을 모금하러 왔는데, 너도 동정한다면 열마라도 좋으니 출금해 달라고 했다. 나는 바로 답할 수는 없으니 생각해 보자고 했더니, 그들은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돌아갔다. .

그런데 그 다음날 金祚吉이 혼자와서 꼭 출금해 달라고 하므로 나는 할 수 없이 처음엔 一〇원을 주었더니 좀더 생각해 달라고 하므로 나는 다시 一〇원을 내어 합계 二〇원을 주었었다.

문 : 그러나 사실은 宋春根 등은 上海의 조선임시정부 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러 왔던 것이 아닌가.

답 : 모른다.

문 : 표면상으로는 천도교주 孫秉熙 이하 三二명 입감자의 가족 구제자금으로 출금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답 :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나로서는 모르나, 宋春根은 나에게 예수교인 또는 학생

들이 다수 입감했으므로 그 가족 또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했었다.

문 : 처음에 기천원을 내라고 했는가.

답 : 처음에는 얼마라도 좋다고 해서 一〇원을 냈더니 좀더 다액을 내라고 해서 결국 二〇원을 주었던 것이다.

문 : 宋春根 등은 피고가 준 돈 二〇원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는가.

답 : 입감자의 가족 구제자금으로 충당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과연 그 자금으로 충당했는지 어떤지 실제의 일은 나로서는 모른다. 또 그 뒤에 내가 낸 돈의 처분에 대하여 그에게서 아무런 통지를 받은 일도 없다.

문 : 피고는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에 같은 피고 宋春根이 발송한 불온한 기사가 실린 조선독립선언 서류 七조를 피고 金祚吉의 손을 거쳐서 받았는데 어떤가.

답 : 묻는 그 무렵에 金祚吉에게서 조선독립선언 서류 七조를 받은 것은 틀림없으나, 宋春根이 발송한 것인지 어떤지, 그런 상세한 사정은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 서류를 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 오후 三·四시경에 金祚吉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서류가 京城에서 왔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배부해 달라고 하면서 주므로 받아서 보니 조선독립에 관한 불온기사가 실린 문서이므로 나는 놀라서 이와 같이 위험한 서류를 받는 것은 물론, 또 그것을 타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으므로 거절하고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金祚吉은 굳이 놓고 갔으므로 나는 할 수 없이 우리 집 벽장 속에 던져 두었는데, 다음 三〇일에 金祚吉이 그 계통에게서 가택수색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만약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발견된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웠으므로 위 서류 전부를 벽장에서 꺼내어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렸던 것이다.

문 : 金祚吉은 위 조선독립선언 서류를 피고의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이 선언의 취지에 찬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답 : 그렇게 말했으나, 나는 조선독립에는 조금도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거절했었다.

문 : 金祚吉은 宋春根과 기택을 통하고 조선독립운동에 관계하고 있었다는데 모르는가.

답 : 전술한 바와 같이 金祚吉은 우리 집에 독립선언 서류를 가지고 왔으므로 가지고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두고 갔었으므로 실제의 일은 모르겠으나, 얼마쯤 조선독립운동에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러나

나는 金祚吉과 宋春根이 독립운동에 대한 관계 정도 등은 모른다.

이 신문은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가 통역했는데 위 녹취한 것을 그 통역 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하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대정 九年 二월 一二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淩見竹太郎

증인 嚴中煥 신문조서

증인 嚴中煥

金祚吉 외 二명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九年 二월
一三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淩見竹太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열석하여 예심판사는 위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직업, 주소를 말하라.

답 : 성명은 嚴中煥

연령은 四五세

직업은 잡화상

주소는 春川郡春川面佳淵里一八번지

예심판사는 형사소송법 제一二三조에 기재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묻고 또 동 제一二四조에 기재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지 어떤지를 조사하고 모두 그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말하고 선서를 하게 하다.

문 : 증인은 피고 金祚吉 및 宋春根과는 친숙한 사이인가.

답 : 宋春根은 일면식도 없으나, 金祚吉은 이웃에 거주하는 관계상 아는 사이이다.

문 : 증인은 金祚吉과 같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가.

답 : 아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다.

문 : 증인은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에 金祚吉에게서 조선 독립선언 서류를 받았는가.

답 : 그렇다. 묻는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 오후 四시경에 나는 우리 집 점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金祚吉이 들어와서 이것을 보라고 하면서 서류 같은 것을 가게에 놓고 갔으므로, 나는 무엇인가 하고 그가 돌아간 뒤에 살펴보니 조선독립선언서라든지 무엇인가 불온한 기사가 있는 문서였으므로, 나는 놀라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불태워버렸다.

문 : 金祚吉은 이 독립선언서를 보고 찬성이라면 원조해 달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답 : 그런 것은 아무런 말도 없었다. 다만 보라고 하고는 돌아갔었다.

문 : 보고는 곧 불태우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답 : 기억이 없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위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다.

대정 九年 二월 一三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증인 洪鍾肅 신문조서

증인 洪鍾肅

金祚吉 외 二명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九年 三월

○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열석하여 예심판사는 위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직업 및 주소를 말하라.

답 : 성명은 洪鍾肅

연령은 四四세

직업은 기독교회 잡지 기자

주소는 春川郡春川面佳淵里一二八번지

예심판사는 형사소송법 제一二三조에 기재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묻고 또 동 제一二四조에 기재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모두 그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말하고 선서를 하게 하다.

문 : 증인은 피고 金祚吉과 친숙한 사이인가.

답 : 그렇다. 같은 기독교도이므로 아는 사이이다. 그리고 나는 一五년 전쯤부터 기독교를 믿고, 지금은 그 교회의 잡지 기자를 하고 있다.

문 : 피고 宋春根과는 어떤가.

답 : 그 사람과는 면식은 있지만 친숙한 사이는 아니다.

문 : 증인은 金祚吉에게서 조선독립선언서류를 받은 일이 있는가.

답 : 있다. 날짜는 잊었으나 대정 八년 一一월 三〇일경으로 생각한다. 나는 볼일이 있어서 金祚吉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도 나와 함께 동행했는데, 春川 식산은행지점 앞에서 시간은 그날 오전 一一시 전후라고 생각한다. 金祚吉은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읽으라고 하면서 활판으로 찍은 선언서 一장, 등사판으로 찍은 선언서 一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성립 축하문 一장, 독립운동가 一장을 나에게 주었으므로 돌아와서 읽었는데, 시국에 대한 불온문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불태워버렸다.

문 : 金祚吉이 가택수색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태운 것이 아닌가.

답 :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발적으로 태워버렸으며, 나는 金祚吉이 가택수색을 받은 것은 전혀 몰랐다.

문 : 읽고 나서 조선독립운동에 찬성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답 : 그런 말은 없었다. 그런데 나는 金祚吉이 독립선언서 취지에 찬성해 달라는 생각으로 주었는지 어떤지 그의 마음은 모른다.

문 : 증인이 金祚吉에게서 받은 독립선언서류는 이것과 동일한 문서인가.

이 때 제一 내지 제四호증을 보이다.

답 : 그렇다. 이것과 같은 서류였다.

문 : 金祚吉 및 宋春根 등은 서로 기맥을 통하고 조선독립운동에 관계하고 있었다는데 모르는가.

답 : 그 전 것은 전혀 모른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丁殷燮

위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다.

대정 九년 三월 一〇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증인 金光鎬 신문조서

증인 金光鎬

金祚吉 외 二명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九년 三월
一〇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열석하여 예심판사는 위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직업 및 주소를 밀하라.

답 : 성명은 金光鎬

연령은 二七세

직업은 기독교 조선어 교사

주소는 春川郡春川面衙洞里一九六번지

예심판사는 형사소송법 제一二三조에 기재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묻고 또 동 제一二四조에 기재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모두 그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밀해주고 선서를 하게 하다.

문 : 증인은 피고 金祚吉과 친숙한 사이인가.

답 : 그렇다. 그와는 기독교 신자끼리이므로 친숙하게 사귀고 있다.

문 : 宋春根은 어떤가.

답 : 그 사람과는 면식이 있을 뿐이다.

문 : 金祚吉 및 宋春根 등은 서로 기택을 통하여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답 : 그런 것은 전혀 모른다.

문 : 증인은 이런 서류를 피고 金祚吉에게서 받은 일이 있는가.

이 때 제一호 내지 제四호증을 보이다.

답 : 그렇다. 보여준 서류와 같은 것을 각각 —장씩 합계 四장을 金祚吉에게서 받은 일이 있다. 그 전말은 대정 八년 一二월 二九일 오후 二시경에 나는 불일이 있어서 金祚吉의 집으로 갔더니 전술한 서류 四통을 주면서 보라고 했다. 그리고 다 읽고는 태워버리라고 하므로 나는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읽어 보니 불온한 기사가 실려 있었으므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태워버렸다.

문 : 읽고 나서 조선독립운동에 찬성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는가.

답 : 그런 말은 없었다. 다만 가지고 가서 다 읽고는 태워버리라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金祚吉이 독립선언서의 취지에 찬성해 달라는 생각으로 주었는지 어떤지 그의 의사는 모른다.

문 : 어디에서 보내 왔다고 했는가.

답 : 그런 것은 아무 말이 없었다. 또 나는 묻지 않았었다.

문 : 증인은 加平의 李起永을 알고 있는가.

답 : 그렇다. 알고 있다.

문 : 증인은 金祚吉의 부탁을 받고 李起永의 집으로 독립선언서류를 가지고 갔다는 데 어떤가.

답 :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대정 八년 一二월 一일에 내가 자동차로 고향인 加平으로 돌아갈 때에 金祚吉이 이것을 加平의 李起永에게 전해 달라고 하면서 一통의 편지를 부탁하므로 나는 그 편지의 내용을 모르고 보통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加平까지 가지고 왔었는데, 조선독립선언서가 들어 있는 봉서라고 하면서 加平경찰서에서 압수했으므로 상대방에게는 전하지 못했었다.

내가 그 때에 처음으로 독립선언서류가 들어 있는 편지라는 것을 알고 놀랐는데, 그 경찰서에서 압수되기까지는 꿈에도 몰랐었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丁殷燮

위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그것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하다.

대정 九년 三월 一〇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참고인 李日宣 신문조서

참고인 李日宣

피고인 金祚吉 외 二명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九年
三월 二二일 京城지방법원에서

예심계 직무대리 조선총독부 판사 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高田源三

열석하여 예심판사는 참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를 말하라.

답 : 성명은 李日宣

연령은 二七세

신분은 —

직업은 사진업

주소는 서대문감옥 재감 기결수

예심판사는 형사소송법 제一二三조 一호 내지 제四호 및 제一二四조 一호 내지 제六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그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참고인으로 신문할 것을 말하다.

문 : 참고인은 어떤 죄로 복역하고 있는가.

답 : 대정 九년 一월 二二일경에 京城복심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죄로 징역 一年 六월을 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문 : 참고인은 宋春根을 알고 있는가.

답 : 대정 六년경으로 생각한다. 그도 참고인도 예수교도인 관계로 京城 광화문 뒤 宗橋예배당에서 함께 있으면서 알게 되었다.

문 : 그와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참고인은 협의를 했다는데 틀림없는가.

답 : 그런 사실은 결단코 없다.

문 : 참고인은 조선독립운동에 관하여 上海임시정부에 대하여 그 자금의 공급, 기타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宋春根은 江原道 春川에 출장하게 하여 자금모집에 종사하도록 한 일이 있는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宋春根은 春川읍내 李東華에게서 二〇원을 독립운동자금으로 받아서 참고인에게 그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그런 일이 없는 것은 물론, 참고인은 그 사람에게서 —리의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문 : 참고인은 宋春根에게 李王세자 전하를 上海로 보내게 되어 있었으나, 그 기회를 잊어서 더욱 조선독립을 선전하는 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금이 소요되는 것 및 上海 임시정부에 자금을 화급하게 조달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春川읍내 金祚吉을 파견하도록 서면으로 명령한 일이 있는가.

답 : 묻는 바와 같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金祚吉이라는 사람은 참고인과 일면서도 없는 사람이다.

문 : 대정 八년 ——월경에 참고인은 京城蓬萊町 宋東秀 명의로 春川읍내 金祚吉에게 조선독립운동에 관한 선언서 및 부속문서 四장 —조의 것 수백장을 굴상자에 넣어서 우송한 일이 있는가.

답 : 그런 사실은 결코 없다.

문 : 그것을 우송하도록 宋春根에게 부탁한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일도 없다.

증제八호를 보이다.

문 : 이것은 위 굴상자에 들어있던 것인데 참고인은 모르는 가.

답 : 이 서면은 참고인이 모르는 것이다.

문 : 이 증서는 참고인이 쓴 것인가. 혹은 참고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쓴 것이 아닌가.

답 : 참고인이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명하여 쓰게 한 일도 없다.

참고인 李日宣

위를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하다.

대정 九년 三월 二二일

京城지방법원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高田源三

예심재판부 직무대리 조선총독부 판사 金川廣吉

총탁서

金祚吉, 李東華, 宋春根의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좌기의 사람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좌기 사항을 신문해 주기 바라와 이에 촉탁함.

그리고 이 촉탁서 및 첨부한 영제—七七호증은 조서와 함께 반려해 주기 바람.

대정 九年 二월 二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京城지방법원

예심계 판사 어중

증인의 성명 및 신문사항

京城 서대문감옥 재감

기결수 李日宣

一, 증인이 宋春根과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협의한 것은 언제이었는가.

—, 증인은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上海임시정부에 대한 자금의 공급, 기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宋春根을 江原道 春川으로 출장하게 하여 자금모집에 종사하게 한 일이 있는가.

그 연월일 등 상세.

—, 宋春根은 春川읍내 李東華에게서 돈 二〇원을 그 자금으로 수령하고, 그것을 증인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것을 어떤 용도에 사용했는가.

—, 증인은 宋春根에게 李王세자 전하를 上海로 보내기로 했으나, 그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더욱 조선독립을 선전하는 신문을 발행하는데 자금이 소요되는 것 및 上海 임시정부에 자금을 급히 조달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春川읍내 金祚吉에게 그 일을 하도록 서면으로 명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그 연월일 등 상세.

—, 증인은 대정 八년 一一월경에 京城蓬萊町 宋東秀의 명의로 春川읍내 金祚吉에게 조선독립운동에 관한 선언서 및 부속문서 四장 一조의 것 수백장을 굴상자에 넣어 우편으로 보낸 일이 있는가. 또는 그 우송을 宋春根에게 부탁한 일이 있는가.

—, 위 굴상자에 넣었던 별지 서면(영제—七七호의 제八호증)은 증인이 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쓰도록 한 것인가.

이상

宋春根 신문조서(제ニ회)

피고인 宋春根

위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九年 三월 二六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淩見竹太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입회하고 동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을 말하라.

답 : 宋春根이다.

문 : 전회의 진술에 틀림없는가.

답 : 틀림없다.

문 : 피고는 전회에 李東華에게서 받은 돈 二〇원을 그 뒤 京城에서 李日宣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李日宣을 조사하니 피고에게서 그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

답 : 전회에 진술한 바와 같이 세브란스병원 운동장에서 李日宣에게 二〇원을 준 것은 틀림없다. 아마 李日宣이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된다.

문 : 李日宣은 피고에게 소요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가족들의 구제자금을 모집하도록 피고에게 부탁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떤가.

답 : 그것도 전회에 진술한 바와 같이 李日宣에게서 부탁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

문 : 그러나 李日宣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어떤가.

이 때 李日宣에 대한 신문조서를 읽어 주다.

답 : 그런 일은 없다.

전회에 진술한 바와 같이 나는 모두 李日宣의 뜻을 받아서 한 일이다.

문 : 그러면 피고는 모두 李日宣의 지시에 따라 조선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인가.

답 : 내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李日宣의 부탁으로 春川의 李東華에게서 돈 二〇원을 받아서,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일 등이 독립운동을 한 것이 된다고 인정되어도 할 수 없다.

이 신문은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가 통역했고, 위 녹취한 것을 그 통역생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하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張錫祚

대정 九年 三월 二六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예심종결처분에 대한 의견서

피고인 宋春根

" 金祚吉

" 李東華

위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 예심종결처분에 대하여 좌기 의견을 불여 소송기록을 반환함.

대정 九年 三월 二九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검사 사무취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柔次郎

동청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귀하

一, 피고 宋春根은 항상 京城에 거주하면서 전부터 李日宣과 조선을 독립국으로 세울 것을 기도하면서 그 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면식이 있는 피고 金祚吉을 대정 8년 6월 26일에 그의 집인 春川읍내로 방문하여 사정을 말하고 출금을 요구하니 피고 金祚吉은 그것에 찬동하고 소유의 자전거를 기부한다고 대답하므로 후일에 그것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이어서 그와 함께 피고 李東華의 집으로 가서 현재 입감중의 孫秉熙 등 일파의 가족을 구휼한다는 명목으로 출금을 요구하여 돈 20원을 받아 가지고 일단 京城으로 돌아왔다.

대정 8년 1월 1일에 동지인 李日宣에게 그 돈을 주고, 그리고 피고 金祚吉과 회합했을 때 독립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널리 동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후일 그 선언서를 보낼 것을 약속했다.

대정 8년 11월 29일에 발송인 宋東秀의 명의로 피고 金祚吉 앞으로 조선독립

선언서 및 같은 취지의 불온기사가 있는 부속문서 四장 一조의 것 五〇〇조를 풀상자에 넣어서 소포우편으로 밀송했다.

二, 피고 金祚吉은 전항 피고 宋春根 등이 기도하는 조선독립운동에 찬동하고,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에 피고 宋春根에게 그 운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유의 자전거一大를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피고 李東華를 설득하여 입감증인 孫秉熙 일파의 가족 구휼을 명목으로 돈 二〇원을 출금하게 했다.

또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에 宋東秀의 명의로 피고 宋春根이 밀송한 조선독립선언서 및 같은 취지의 불온기사가 실린 문서 四장 一조의 것, 곧 전항과 같이 五〇〇조가 들어 있는 풀상자를 받고, 즉일 내에 七조를 피고 李東華에게, 一조는 金敏秀에게, 一조는 嚴中煥에게, 一조는 池達源에게, 一조는 金光鎬에게, 그 다음 三〇일에 洪鍾肅에게 一조를 각각 교부하고, 그 다음날 三一일에 李起永에게 一조를 교부하기 위하여 金光鎬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여 조선독립운동의 찬동을 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그 증빙이 충분하고 피고 양인의 행위는 대정 八년 제령 제七호 제一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一六七조에 의거하여 京城지방법원 합의부의 공판에 부친다.

피고 李東華가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에 피고 宋春根, 동 金祚吉에게 돈 二〇원을 주고,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에 피고 金祚吉로부터 조선독립에 관한 불온기사가 있는 문서의 교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가 독립운동에 찬동하고 치안을 방해하려고 한 범죄의 증빙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형사의 정치법 제一六五조 제一항에 의하여 면소한다. 위와 같이 각각 언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심결정

京城府櫻井町二丁目一五五번지

의학생 宋春根

二九세

江原道春川郡春川面佳淵里九六번지

자전거업 金祚吉

四〇세

江原道春川郡春川面司倉里二八번지

농업 李東華

四〇세

위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예심을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 한다.

주문

피고 宋春根, 金祚吉에 대한 본건을 京城지방법원 합의부에 부친다.

피고 李東華를 면소한다.

이유

피고 李春根은 항상 京城에 거주하면서 전부터 李日宣과 조선을 독립국으로 세울 것을 기도하면서 그 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전부터 아는 피고 金祚吉을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에 그의 春川 집으로 방문하여 그 사정을 말하고 출금을 요구하니 피고 金祚吉은 그것에 찬동하고 소유의 자전거를 기부하겠다고 해서 후일 그것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祚吉과 함께 피고 李東華의 집으로 가서 현재 입감중인 孫秉熙 일파의 가족을 구휼한다는 명목으로 출금을 요구하여 돈 二〇원을 받아 가지고 일단 京城으로 돌아왔다.

대정 八년 一월 一일 동지인 李日宣에게 그 돈을 교부했다.

그리고 위 피고와 회합했을 때에 독립운동을 하는데는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널리 동지를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후일에 그 선언서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다.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에 발송인 宋東秀의 명의로 피고 金祚吉 앞으로 조선독립선언서 및 그 취지의 불온한 기사가 있는 부속문서 四장 一조의 것 五〇〇조를 굴상자에 넣어서 소포우편으로 보냈다.

피고 金祚吉은 전항 피고 宋春根 등이 기도한 조선독립운동에 찬동하고,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 피고 宋春根에 대하여 그 운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유의 자전거 一대를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피고 李東華를 설득하여 입감중인 孫秉熙 일파의 가족을 구휼한다는 명목으로 돈 二〇원을 출금하게 했다.

그리고 대정 八년 ——월 二九일 宋東秀 명의로 피고 宋春根이 보낸 조선독립선언서 및 그 취지의 불온기사가 있는 문서 四장一조의 것, 곧 전항과 같이 五〇〇조가 들어 있는 굴상자를 받고, 그날로 七조를 피고 李東華에게, 一조는 金敏秀에게, 一조는 嚴中煥에게, 一조는 池達源에게, 一조는 金光鎬에게, 그 다음 三〇일에 洪鍾肅에게 一조를 교부하고, 그 다음날 三一일에 李起永에게 一조를 교부하려고 金光鎬에게 그 전달을 부탁하여 조선독립운동의 찬동을 요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다.

이상은 증빙이 충분하고 피고 양인의 소행은 대정 八년 제령 제七호 제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형사소송법 제一六七조에 의거하여 공판에 부쳐야 한다.

피고 李東華는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 피고 宋春根, 金祚吉에게 돈 二〇원을 교부하고, 대정 八년 ——월 二九일에 피고 金祚吉에게서 조선독립에 관한 불온기사가 있는 문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독립운동에 찬동하고 치안을 방해하려고 한 범죄의 증빙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一六五조 제一항에 의하여 면소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정 九년 二월 二九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淺見竹太郎

공판시말서

金祚吉, 宋春根 정치범죄 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九년 九월 三〇일 오전 九시 京城지방법원의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伊東淳吉

동 동 太宰明

동 동 藤村英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園部弘一

열석

조선총독부 검사 平山正祥 입회.

피고인은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고 출정하다.

변호인 韓東履 출정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신부,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본적, 주소 같이

江原道春川郡春川面佳淵里九六번지

자전거업 金祚吉

二월 二八일생 四一세

본적, 출생지 같이

楊州郡廣積面大地里一五六번지

주소 京城府櫻井町二丁目一五五번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三년생 宋春根

—二월 一八일생 二九세

검사는 예심종결 결정서에 기재한대로 공소사실을 진술하다.

재판장은 피고 宋春根에게

문 : 전과가 있는가.

답 : 없다.

문 : 위기, 훈장, 연금 등을 가지고 있는가.

답 : 없다.

문 : 피고는 宋鳳海가 아닌가.

답 : 어릴적 이름이 宋鳳海이다.

문 : 春根이 어릴적 이름이고, 鳳海가 관명이 아닌가.

답 : 아니다. 春根이 본명이고, 鳳海는 어릴적 이름이다.

문 : 피고의 아버지는 宋命善인가.

답 : 그렇다.

문 : 피고는 그의 二남으로 鳳海(三一세)가 아닌가.

답 : 이름도 나이도 민적이 잘못되었고, 春根(二九세)이다.

문 : 피고는 기독교 신자인가.

답 : 그렇다.

문 : 무슨 파인가.

답 : 남감리파이다.

문 : 언제부터 기독교를 믿었는가.

답 : 一〇여년 전부터 믿고 있다.

문 : 세례를 받았는가.

답 : 받았다.

문 : 대정 八년 三월 一일에 孫秉熙 등 三三명이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이래 각처에서 그 찬동자의 시위운동이 성행한 것을 알고 있는가.

답 : 알고 있다.

문 : 피고는 기독교 신자로서 그 교의 신자도 다수 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도 그 거사에 찬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 : 마음 속으로는 그 거사에 찬성하고 있었지만, 행위상으로는 그 당시 나타내지 않았었다.

문 : 피고는 李日宣, 金應洙와는 전부터 친숙한 사이인가.

답 : 그렇다.

문 : 작년 九월중에 그들이 소요사건으로 검거되었다는데 어떤가.

답 : 그들이 물은 바와 같이 검거된 것을 알고 있다.

문 : 李日宣과는 어떤 관계로 친숙하게 되었는가.

답 : 종교 관계로 아는 사이인데 매우 친숙한 것은 아니었다.

문 : 대정 八년 여름쯤 李日宣이 중국으로 가서 上海 방면에서 방랑하다가 돌아왔는데, 피고는 그 뒤 그에게서 그 정황을 들었는가.

답 : 그 뒤에 한 번 李日宣을 만났었다.

문 : 李日宣이 피고에게 上海 방면의 정황을 말하고, 上海임시정부의 孫貞道, 安昌浩, 呂運亨 등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고 왔는데, 요는 임시정부에서는 자금부족 이니 조선으로 가서 자금을 공급해 달라고 해서 돌아왔다고 피고에게 털어 놓은 일이 있는가.

답 : 직접 李日宣에게서 그런 말을 듣지 않았으나, 대체의 정상으로 보아 듣긴 들었는데 누구에게서 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문 : 피고는 李日宣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조선인민으로서 독립운동의 자금을 공급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 상의하고 작년 六월에 피고는 春川으로 가서 자금의 조달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

답 : 별로 李日宣과 상의하고 조선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春川으로 간 것이 아니라, 피고가 春川에 간 것은 작년 三월이래 조선독립운동의 죄에 연루되어 입감중의 학생들과 가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금전을 모집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다.

문 : 孫秉熙 일파의 입감자의 가족에는 불행한 사람이 있으므로 그 구제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처음은 밀해 왔으며, 예심판사의 심문을 받을 때에는 조선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上海임시정부에 송금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목적을 말하고 출금하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은가.

답 : 그런 취지의 질술은 하지 않았다.

문 : 그러나 피고가 진술하지 않은 것을 예심조서에 쓸리가 없지 않은가.

답 : 결코 그런 진술은 하지 않았다.

문 : 하여튼 작년 六월 二五일에 春川面佳淵里九六번지 金祚吉을 그의 집으로 방문하여 위의 목적을 말하고 찬동을 얻었으나, 그는 현금이 없으므로 자전거를一代 내겠다고 했다는데 틀림없는가.

답 : 그 때 독립운동자금 모집 운운은 말한 일이 없다. 입감중의 학생들의 가족을 구제할 목적으로 돈을 모집하러 왔다는 뜻을 말했더니 그는 그 취지에는 찬동하지만 현재 현금이 없으니 자전거一代를 냘 터이니 팔아서 구제자금으로 쓰려면 내겠다고 했었다.

문 : 그래서 결국 자전거라도 좋다고 하고, 후일에 받을 약속을 한 셈인가.

답 : 단순히 말만 있었고, 언제 받는다고까지 확정을 하지 않았으나, 하여튼 자전거를 받기로 했었다.

문 : 그리고 피고는 그달 二六일에 金祚吉과 함께 적당한 인물을 물색하여 그를 데리고 春川郡春川面司倉里 李東華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앞에서와 같이 출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문 : 그리고 다음 二七일 그는 그것을 승낙하고 돈 二〇원을 제공했으므로 피고는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그것은 틀림없다.

문 : 모두 孫秉熙 일파 입감자의 가족을 구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변

명에 지나지 않고 실은 독립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답 :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문 : 그리고 春川을 떠나 京城으로 온 것은 언제인가.

답 : 六월 二八일에 春川을 출발하여 자동차로 그날 京城으로 돌아왔다.

문 : 그리고 春川에서 李東華에게서 받아온 二○원은 어떻게 했는가.

답 : 六월 말일인지 七月 일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정에서 李日宣에게 주었다.

문 : 李日宣을 조사해 보니, 피고에게서는一전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그것은 그가 잊어 버렸는지 모르나, 확실히 준 것에 틀림이 없다.

문 : 피고가 말하는 것 같이 입감자의 가족을 구휼하는 자금이라면 받아도 좋을 것 이므로 李日宣이 받은 것을 받지 않았다고 할리가 없는데, 그가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독립운동 자금을 받아 가지고 와서 주었기 때문에 李日宣도 말하기 어려워서 부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

답 : 하여튼 처음부터 李日宣에게서 입감중인 학생의 가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모집 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와서 주었었다.

문 : 피고는 京城에 온 뒤에 같은 피고 金祚吉 앞으로 자전거와 등사판을 보내 달라고 했다는데 어떤가.

답 : 그대로 李日宣의 부탁을 받아서 金祚吉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 틀림없다.

문 : 그 점에 대해서 예심에서 그와 같이 독촉해 보낸 것은 독립운동자금으로서 받아온 것인데, 자전거는 독립운동에 필요하니 빨리 보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

답 : 그렇게 진술한 일은 없다.

문 : 피고는 여러가지로 변명한 끝에 제반의 문서를 들이대면 그렇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사실이 아닌가.

답 : 피고는 李日宣의 부탁으로 편지를 냈는데, 그는 그 때 국민신문을 경영하는 한 편 입감중의 학생의 가족을 구제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으니 보내 달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편지를 보냈었다.

증 제一〇호를 보이다.

문 : 그 편지는 이것인가.

답 : 그렇다. 그리고 피고가 쓴 것이다.

문 : 그리고 피고는 春川에 있는 金祚吉에게, 조선인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널리 동지를 모집해서 다수의 찬동을 얻을 필요가 있으니 독립선언서라든지, 같은 취지의 기사가 있는 서면을 배포하여 독립사상을 선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京城으로 돌아와서 손에 들어오는대로 보내겠다고 약속해 온 취지인데 어떤가.

답 : 아니다. 그렇지 않다.

문 : 그런 약속을 하고 작년 ——월중에 京城蓬萊町一丁目二번지 宋東秀(철물상)라는 가명으로 金祚吉 앞에서 굴상자에 넣어 독립선언서 및 같은 취지의 기사가 있는 부속서면 四장一조의 것 五〇〇조를 소포로 우송했다는데 어떤가.

답 : 그런 소포를 金祚吉에게 보낸 일은 없다.

증一호 내지 五호를 보이다.

문 : 증제一호 내지 四호를 五호의 굴상자에 넣어 보냈던 것인가.

답 : 보낸 일은 없다.

증제一〇호를 보이다.

문 : 피고가 쓴 것임에 틀림없는가.

답 : 피고가 쓴 것임에 틀림없다.

증제八호를 보이다.

문 : 피고의 필적인가.

답 : 피고는 아니다.

기록 제七四五정을 보이다.

문 : 피고가 예심에서 쓴 것인가.

답 : 그렇다.

증제六호를 보이다.

문 : 피고가 쓴 것인가.

답 : 아니다. 피고가 쓴 것이 아니다.

문 : 이것은 불온문서를 썬 것인데 五호의 굴상자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이 필적과 피고가 인정한 一〇호의 필적과 기록 七四五정의 피고가 예심에서 쓴 필적과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어떤가.

답 : 보여준 六호는 피고가 모르는 것이다.

문 : 피고가 앞서 시인한 바와 같이 작년 三월이래 조선 각지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내심 찬동하고 있었으므로 李日宣과 상의하고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답 : 李日宣이 부탁해서 불온문서 등을 보낸 일은 없다.

증제一호를 보이다.

문 : 이 선언서를 본 일이 있는가.

답 : 본 일도 없다.

문 : 세브란스병원내에 있는 것, 또는 기독교 신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도 본 일이 있지 않은가.

답 : 본 일도 없다.

문 : 韓基東을 아는가.

답 : 모른다.

문 : 全協을 아는가.

답 : 모른다.

문 : 全協, 韩基東 등 大同團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세브란스병원 쪽에서 본 일 이 있지 않은가.

답 : 모른다.

증제二호를 보이다.

문 : 이 등사판 쪽은 본 일이 있는가.

답 : 본 일이 없다.

문 : 羅昌憲, 申鉉九, 李信受 등을 아는가.

답 : 모른다.

문 : 앞에서 보여준 증제一호 내지 四호의 불온문서는 작년 一一월 二九일에 金祚吉의 집에 도착해 있었으므로 京城에서 발송한 것은 아마도 그달 二七·八일 경으로 생각되는데, 방금 들려준 사람들이 제二의 독립운동으로 반포한 것인데, 피고는 그것을 京城에서 손에 넣어 金祚吉에게 보냈던 것이 아닌가.

답 : 결코 피고가 보낸 것이 아니다.

피고 金祚吉에게

문 : 위훈 등을 가지고 있는가.

답 : 없다.

문 : 전과가 있는가.

답 : 대정 七년 六월 二七일에 春川법원지청에서 총포화약류 단속규칙 위반으로 벌금 一〇원의 처분을 받고 완납했다.

문 : 피고도 기독교 신자인가.

답 : 그렇다. 그리고 남감리파이다.

문 : 언제부터 그 교를 믿었는가.

답 : 一〇년 전부터 믿고 있다.

문 : 세례를 받았는가.

답 : 받았다.

문 : 같은 피고 宋春根은 언제부터 이는 사이인가.

답 : 五년 전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문 : 그 무렵에 宋春根은 春川에 있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宋春根은 그 무렵 어느 서양인의 조선어 교사를 하고 있었는가.

답 : 미국인 부인 吳利夫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문 : 그런데 몇년쯤 宋春根은 春川에 있었는가.

답 : 三년쯤 있었다.

문 : 그 동안 宋春根과는 친숙하게 왕래하고 있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대정 八년 六월 二六일에 宋春根은 春川으로 와서 피고의 집을 방문했다는데 어떤가.

답 : 그것은 틀림없다.

문 :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답 : 자기는 지금 휴가중인데, 독립운동으로 입감중의 孫秉熙 等 三三명과 학생들이 이 입감되어 있는 가족을 구휼하기 위하여 모금하러 왔다고 했다.

문 : 그렇지 않고 上海임시정부에서 자금이 없어서 독립운동을 생각대로 활발하게 할 수가 없으므로 그 자금을 모집하러 왔으니 찬동하고 자금을 각출해 달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답 : 묻는 바와 같은 말을 듣지 못했다.

문 :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는가.

답 : 二六일에는 그 말 뿐이었고, 다시 二七일에 와서 상당히 기부해 달라고 하므로
지금은 현금이 없으니 자전거一代를 내겠다고 했다.

문 : 그리고 언제라도 宋春根이 말하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인가.

답 : 확실한 약속은 하지 않았으나, 단순히 준다고 했을 뿐이다.

문 : 그러면 상대방에게서 달라고 하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

답 : 단순히 자전거一代를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후일에 자전거를
내라고 한다면 一〇원이나 二〇원을 낼 생각이었다.

문 : 二六일에 宋春根이 피고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해 달라고 해서 피고는 宋
春根과 함께 春川面司倉里 二八번지 李東華의 집으로 가서 피고에게 宋春根
이 말한 바와 같이 서로 李東華를 설득했으나, 그날은 그가 난색을 표명하므로,
다음날 다시 二명이 그의 집으로 가서 결국 찬동을 얻고 二〇원을 내게 하
여 받아왔다는 것인데 어떤가.

답 : 그것임에 틀림없다.

문 : 그리고 宋春根이 春川을 출발하여 京城으로 돌아갈 때에 독립사상을 선전하여
다수를 찬동시키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선언서 기타 고무시킬 만
한 서면을 다수 배부할 필요가 있으니 귀경 후에 손에 들어오는대로 보낸다는
말은 없었는가.

답 : 그런 말은 없었다.

문 : 그리고 작년 一一월 二九일 정오 후에 쿨상자의 소포우편물 발송이 京城蓬萊
町一丁目二번지 철물상 宋東秀 명의로 다수의 서류가 피고의 집으로 배달되었
다는는데 어떤가.

답 : 물은 바와 같이 확실히 받았다.

증제五호를 보이다.

문 : 소포가 넣어져 배달된 상자인가.

답 : 그렇다.

증제一호 내지 四호를 보이다.

문 : 지금 보인 五호 상자에 넣어져 온 서류인가.

답 : 그렇다.

증제八호를 보이다.

문 : 그리고 소포우편물 중에 이것이 들어 있던 것도 틀림없는가.

답 : 소포 중에 넣어져 있던 것이 틀림없다.

증제六호를 보이다.

문 : 이것으로 증제一호 내지 四호를 포장하여 굴상자 속에 들어 있던 것이 틀림없는가.

답 : 보여준 물건은 본 일이 없다.

문 : 피고의 집에서 나온 것인데 어떤가.

답 : 전부 한꺼번에 끌어내지 않았으므로 모른다.

문 : 그러나 굴상자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집 벽장에서 나온 것인데 어떤가.

답 : 아니다. 나는 벽장 속에 넣어둔 일은 없다.

문 : 그것에는 선언서 五〇〇장 윤운하고 적혀 있으니 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답 : 피고는 본 일이 없다.

문 : 이 글자는 宋春根의 필적이 아닌가.

답 : 그 점은 모른다.

문 : 소포의 결봉지를 보더라도 宋이라고 쓰여 있으니 宋春根으로 생각된다. 또 필적도 宋春根일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는가.

답 : 아니다.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신문할 때에 모른다고 대답했었다.

문 : 소포 속에 들어 있던 것은 五〇〇부인가.

답 : 세어보지 않았으므로 모른다.

문 : 이 서면에도 五〇〇부라고 되어 있으니 五〇〇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답 : 전부를 세어보지 않았으므로 모른다.

문 : 속에 들어 있는 것을 二九일에 二〇조만 정리했다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증제一호 내지 四호를 보이다.

문 : 一호가 활판으로 찍은 선언서, 二호가 등사판으로 찍은 선언서, 三호가 대한민

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四호가 독립운동가 四장 을 一조로 해서 二〇조를 정리해 만들었다는 것인가.

답 : 그것임에 틀림없다.

문 : 그리고 一〇조만 호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와서 그날로 七조를 司倉里의 李東華에게 배부했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문 : 그리고 그날 大板里의 池達源에게 一조를 주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그날 중으로 嚴中煥에게 一조를 준 것도 틀림없는가.

답 : 틀림없다.

문 : 그리고 그날 피고의 점포에 온 佳淵里 金敏秀에게 一조, 衙洞里 金光鎬에게 一조를 주었다는데 어떤가.

답 : 그것임에 틀림없다.

문 : 그리고 그달 三〇일에 洪鍾肅에게 一조를 주었다는데 어떤가.

답 : 그것임에 틀림없다.

문 : 그 다음날 一二월 一일에 李起永에게 주기 위하여 金光鎬에게 전달을 부탁했다는데 어떤가.

답 : 그것 역시 틀림없다.

문 :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배부했는가.

답 : 상자를 열어보니 일반에게 배부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부득이 배부했다.

문 : 명령에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하는가.

답 : 명령을 받아 보지 않으면 모른다.

문 : 증제一호 내지 四호에 쓰여 있는 것은 숙독했는가.

답 : 숙독했다.

문 : 요는 그 기재는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독립을 선전하는 취지의 선언서라는 것을 아는가.

답 : 안다.

문 : 글자는 안다면 단순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이라는 제목만 보아도 독립운동에 관한 불온문서라고 알 것인데.

답 : 물론 안다.

문 : 그뿐 아니라, 작년 三월이래 각처에서 독립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 소요까지 있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목적인가.

답 : 그렇다.

문 : 그런 운동의 목적이 있는 문서를 배부했다면 피고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 되는 데 어떤가.

답 : 그 점은 모른다.

문 : 부정한 다수의 사람에게 배부한다면 그 사람들은 불온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답 : 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피고로서는 모른다.

문 : 피고는 일의 발각을 염려하여 一二월 二一일 오후에 경찰관에게 동행될 때에 옷속 호주머니에 넣고 있던 一조를 도중에서 던져버렸다는 데 어떤가.

답 : 그것임에 틀림없다.

문 :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은 그 서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어 적발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인가.

답 : 결코 자기는 서면 내용에 찬성의 목적으로 배부한 것은 아니다.

증제九호를 보이다.

문 : 피고의 집을 가택수사한 결과 방의 장롱 속에 들어 있던 것인데 어떤가.

답 : 소포인 쿨상자 속에 함께 넣어 있던 것이다.

문 : 八호의 「서류배부의 전 주의」라고 하는 것과 함께 들어 있던 것인가.

답 : 그렇다.

문 : 연락에 관한 답변의 취지라고 있는데, 한쪽 八호에는 이것을 보라고 되어 있으니, 그것을 보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답 : 그 때 보았지만 내용은 모른다.

문 : 피고가 밤중에 배부한 점 및 흙속에 묻어둔 것은 어떤 까닭인가.

답 : 그것은 제목만으로 독립에 관한 서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 : 그러면 피고는 독립운동의 취지는 물론 찬성하고 있었던 것인가.

답 : 불찬성이라고는 진술하지 않았으나, 찬성하는 행위를 나타낸 일은 없다.

문 :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인정한 바는 독립운동에 찬성한 행위가 아닌가.

답 : 명령에 의하여 조선인으로서 부득이한 일이다.

문 : 명령이 있으면 선악의 분별 없이 복종하는 것인가.

답 :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음)

여기에서 피고 양인에게

사법경찰관의 각 피고인 및 金再興, 池達源, 李東華, 金敏秀, 李一成, 朴來鎮, 洪鍾肅, 宋士羅, 崔兌崑, 嚴中煥, 金光鎬, 姜安羅, 李基永, 金振榮, 李敦議 각 조서, 또는 청취서.

검사의 각 피고인 조서, 李東華, 池達源, 金光鎬, 金敏秀, 嚴中煥, 洪鍾肅 각 조서.

사법경찰관의 洪鍾肅, 許鏞 각 조서.

예심에서의 각 피고인 및 李東華, 嚴中煥, 金敏秀, 池達源, 李起永, 洪鍾肅, 金光鎬, 李日宣 각 조서.

증제一호 내지 二二호를 보이다.

문 : 의견이나 변해가 있는가. 또 이익의 증빙이 있으면 진술할 수 있다.

답 : (피고 양인) 그 밖에 진술할 것이 없다.

재판장은 결심의 뜻을 말하다.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논하고, 예심종결 결정서에 기재한 각 법조를 적용하여 宋春根에게 징역 二년, 金祚吉에게 징역 一年을 언도해 주기 바란다고 구형하다.

변호인은 宋春根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변론을 하다.

각 피고인은 최종의 진술 없다고 진술하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一〇월 八일 오전 九시에 판결언도한다고 말하고 폐정하다.

본 건의 심리는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李和鍾이 통역하다.

당일 같은 청에서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園部弘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伊東淳吉

공판시말서(제二회)

金祚吉, 宋春根 정치범죄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九年 一〇월 八일 오전 九시 京城지방법원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伊東淳吉

동 동 太宰明

동 동 藤村英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園部弘一

열석

조선총독부 검사 川崎爲三 입회.

피고인은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고 출정하다.

변호인은 불출정.

재판장은 판결을 언도한다고 말하고, 판결주문의 낭독으로 판결을 언도하고 구두로 그 이유의 요령을 말하고 또 이 판결에 대하여 五일내에 공소할 수 있다는 것 및 자비로 판결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하다.

본건의 언도는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李和鍾이 통역하다.

대정 九年 一〇월 八일

京城지방법원 형사부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園部弘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伊東淳吉

상소권 포기 신청서(宋春根)

서대문감옥 재감

정치범 피고인 宋春根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九年 一〇월 八일 京城지방법원에서 징역 一年 六개월에 一八〇일 통산의 언도를 받고 상소 기간중에 있는 바 그 상소권을 포기하고 복역하고자 이에 신청함.

대정 九年 一〇월 九일

위 宋春根

위 대서 및 무인을 증명함.

간수 占部武夫

京城지방법원장

조선총독부 판사 齊藤庄三郎 귀하

공판시말서(복심법원)

金祚吉 정치범처벌령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九年 一一월 一一일 오전 一〇
시 京城복심법원 법정에서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野村調太郎

동 동 宮本元

동 동 文澤圭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姜錫夏

열석

조선총독부 검사 濰谷有孚 입회하여 변론을 공개하다.

피고인은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고 출정하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성명, 연령, 족칭,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 성명은 金祚吉

연령은 二월 二八일생 四一세

족칭은 —

직업은 자전거업

주소는 江原道春川郡春川面佳淵里九六번지

본적은 위와 같다.

출생지는 平壤府大興里

문 : 정치범처벌령 위반사건에 대하여 京城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공소를 했는가.

답 : 그렇다.

문 : 작위, 훈장, 기장을 가지고 연금, 은급을 받거나 또는 공무원의 직에 있지 않은가.

답 : 모두 관계가 없다.

문 : 전과가 있는가.

답 : 있다. 대정 七年 六월 二七일 京城지방법원 春川지청에서 총포화약류 단속규 칙 위반으로 벌금 一〇원의 처분을 받고 완납한 일이 있다.

문 : 피고는 대정 八년 一一월 二九일에 전부터 친숙하게 지내던 원심 피고 宋春根 에게서 조선독립운동에 관한 불온서류를 부쳐온 일이 있는가.

답 : 그 문서는 宋東秀라는 사람이 보내왔으므로 宋春根에게서는 아니다.

문 : 그 보내온 문서는 宋春根의 필적으로 피고는 경찰 취조에 대하여 그 보내온 선언서 등의 우편물은 발송인은 宋東秀로 되어 있지만 그 이름을 빌려서 딴 사람이 보낸 것으로 필적 등으로 판단하여 피고 宋春根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은가.

답 : 그런 진술을 한 기억은 없다.

문 : 원심 피고 宋春根은 위 서류를 피고에게 보낸 죄로 처분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그가 보낸 것은 틀림이 없지 않은가.

답 : 나는 모른다.

문 : 피고는 이전에 春川에서 宋春根과 만나서 조선독립선언에 관하여 협의를 받은 일이 있는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피고는 宋春根과 함께 조선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려고 상의하고, 李東華에게서 그 자금으로 돈 二〇원을 내게 한 일이 있지 않은가.

답 : 宋春根은 독립운동으로 입감중의 孫秉熙 등 三三명의 가족을 구휼하기 위하여 돈을 모금하러 왔다고 하므로 나는 李東華에게 말하여 가족 구휼자금으로 돈 二〇원을 내게 했었다.

문 : 宋春根은 조선독립운동에 관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답 : 그런 것은 모른다.

문 : 宋春根은 전에 春川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알고 있는 것인가.

답 : 그렇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예수교 신자이다.

문 : 피고는 자전거一代를 독립운동비로 기부할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답 : 宋春根이 너도 입감자의 가족 구휼금을 내어 주지 않겠느냐고 하므로 나는 현금은 없지만 장사하고 있는 자전거리면一代를 기부해도 좋다고 했었다.

문 : 宋春根이 그 구휼비를 모으기 위하여 春川에 온 것은 언제인가.

답 : 작년 六월 二五일경이다.

문 : 그 때 조선독립운동비를 모집하는 것에 더욱 기세를 올려서 불온문서를 각처에 배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상의한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宋春根이 春川을 떠난 아래 불온한 글을 실은 서면 또는 신문을 보내온 일이 있는가.

답 : 그렇다. 한 번 조선 독립신문을 보내 왔었다.

문 : 그 독립신문은 어디에서 발간한 것인가.

답 : 모른다.

문 : 작년 一一월 二九일 정오경에 굴상자에 넣은 소포 우편물 발송인 宋東秀 명의로 다수의 서류가 피고의 집으로 배달되어 왔다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틀림없다.

영제五호증을 보이다.

문 : 이것은 서류를 넣어 보내온 상자인가.

답 : 그렇다.

동 제一호 내지 四호를 보이다.

문 : 방금 보인 五호 상자에 넣어서 보내온 서류인가.

답 : 그렇다.

문 : 위 서류는 각 五〇〇장씩 일괄되어 있었는가.

답 : 그 수량은 모른다.

동 제八호증을 보이다.

문 : 이것은 위 서류 중에 있던 것인데 그 서류를 배부하는데 대한 주의서인가.

답 : 그렇다. 그것에 의하여 배부했다.

동 제六호증을 보이다.

문 : 이것으로 영제一호 내지 四호는 포장하여 굴상자에 넣어져 있었던 것인데, 피고의 집 벽장 속에 숨겨 두었던 것인가.

답 : 굴상자 밑바닥에 깔아 놓은 것인데 경찰에서 수색할 때에 제출한 것이다.

문 : 위에서 보인 一호가 활판으로 찍은 선언서, 二호가 등사판으로 찍은 선언서, 三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四호가 독립운동가 四장을 一조로 해서 二〇조로 정리해 만들었는가.

답 : 그렇다. 그 보내온 그날 二〇조를 만들었다.

문 : 위 각 서류를 피고는 숙독했는가.

답 : 그렇다. 대략 보았다.

문 : 그리고 조선독립에 관한 선전문서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위 서류를 배부하면 그것을 받은 대중의 인심은 선동될 것은 피고도 예측했는가.

답 :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각각 배부를 받은 사람에게 한 번 본 뒤에 태워버리라고 말해 두었었다.

문 : 피고는 위 문서 二〇조 중에서 一〇조만 호주머니 넣고 집을 나와서 그날 七조 를 李東華에게 배부하고, 그 중의 一조는 그에게, 그 나머지는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배부하도록 부탁했는가.

답 : 그렇다.

문 : 그리고 그날 池達源, 嚴中煥, 金敏秀, 金光鎬에게 각각 一조씩 주었다는데 그 런가.

답 : 그렇다. 틀림없다.

문 : 그리고 그달 三〇일에 洪鍾肅에게 一조를 주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위는 각각 어디에서 주었는가.

답 : 내가 각각 그 집으로 방문하여 주었다.

문 : 그리고 一二월 一일에 李起永에게 전하기 위하여 金光鎬에게 그 전달을 부탁 한 일이 있는가.

답 : 그렇다. 틀림없다.

문 : 각각 그 준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 하면서 주었는가.

답 :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라고 했다.

문 : 피고는 상대가 조선인이면 누구에게나 줄 생각이었는가.

답 : 그렇지는 않다.

문 : 피고의 희망으로는 조선독립운동에 찬성할 사람에게 줄 생각이었는가.

답 : 별로 표준은 없었다. 모처럼 배부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주었었다.

문 : 피고는 조선독립운동에 찬성할 의사가 있는가.

답 :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문 : 피고는 그런 불온문서를 배부하였으니 불온사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답 :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문 : 피고는 그런 문서를 배부하다가 발각되면 처분을 받을 것은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 다소 각오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 : 피고는一二월 二一일 오후에 경찰관에게 동행될 때에 一조를 옷속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도중에 던져버렸다는데 그런가.

답 : 그렇다. 그것은 二一일이 아니고 一일이다.

문 : 피고는 각인에게 배부한 나머지는 굴상자에 넣은 채로 빈 헛간에 묻어서 사람의 눈에 띠이지 않도록 해 두었다는데 어떤가.

답 : 그렇다.

동 제九호증을 보이다.

문 : 이것도 상자 안에 있던 것인가.

답 : 그렇다. 나는 보았으므로 내용을 안다.

문 : 피고는 언제부터 자전거업을 하고 있는가.

답 : 이전에는 開城에서 철공을 하고 있다가, 대정 원년경부터 자본금 三〇원쯤으로 자전거상을 하고 있다. 나는 달리 재산은 없다.

영제一二호를 보이다.

문 : 이것은 작년 八월 一六일 宋東秀에게서 온 편지인가.

답 : 그렇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기록 중의 보고서, 사법경찰관, 검사, 예심정에서의 각 조서, 원심 공판시말서 등을 읽어 주고, 또 압수한 증거물을 보이고, 그 각각 증빙의 조사가 끝날 때마다 의견 및 변해의 유무를 묻고, 그리고 이익이 될 증거는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다.

피고인은 더 진술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은 사실 및 증빙조사가 끝났다고 말하다.

검사는 피고의 공소는 이유 없다고 논고하다.

재판장은 피고에 대하여

문 : 더 진술할 것이 없는가.

답 : 더 진술할 것이 없다.

재판장은 결심한다고 말하고 판결언도 기일을 오는 一一월 一六일 오전 一〇시로

지정하고 출두를 명하다.

사건송치서

죄명	대정 八년 四월 제령 제七호 위반	피고인성명	구속 金永璣 " 鄭基舜 불구속 宋春根 " 張基賢 " 李喜璇 " 趙喜源
발각원인	河崎경부보 보고		
수리	대정 一〇년 一월 八일		
유치	대정 一〇년 一월 一五일 一九일		
방면	대정 一〇년 一월 一七일		
조사중 또 는 조회사항	간도총영사관 경찰서 앞으로 권총 소재 수사의 건을 조회중		
비고	피고 趙喜源은 一월 一五일 동 金永璣, 동 鄭基舜은 一월 一九일 유치함 피고 趙喜源은 一월 一七일 석방, 동 張基賢, 李喜璇은 미체포		

위 피고사건을 별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송치하는 바임.

대정 一〇년 二월 二일

京城鍾路경찰서장

조선총독부 도경시 國宗鹿太郎

京城지방법원 검사국

조선총독부 검사정 境長三郎 귀하

ও

ৰ